

2023년 부평구 종합감사 결과

2023. 5.



[감 사 관]

2023년도 부평구 종합감사 결과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2023. 3. 6. ~ 3. 17.(10일간)
- 감사범위: 2020. 1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사단: 3개 반 21명
- 감사중점
 - 기업애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업무관행
 - 주요사업 예산 운영현황 점검, 토목·건축 공사 집행과정 및 안전성 점검
 - 청렴 취약업무(인사, 회계, 계약, 공사, 인·허가 등), 동일반복 지적사례 등
 -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적정성
 - 각종 보조금 관리 적정여부 및 집행·정산·평가 실태
 - 개인정보보호,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취약분야 운용 실태

2. 감사결과

○ 처분요구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기관 경고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계	추징 회수	추급 환급	계	경징계	훈계	
84	29	50	5	1,083,879	465,658	618,221	18	5	13	2

○ 처분요구 내역

(단위: 천원, 명)

연번	분야	제 목	관련부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경고	
1	전 산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소홀	○○ 외 2개 부서	주의				
2	전 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미흡	◇◇	주의				
3	전 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소홀	●● 외 25개 부서	주의				
4	전 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관리 소홀	◇◇ 외 15개 부서	개선				
5	전 산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미흡	□□	주의				
6	인 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승진 임용	●●	주의		징계○ 훈계○		
7	인 사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 ■■	주의		징계○ 훈계○		
8	인 사	공무직근로자 채용업무 부당 처리	●●	주의		징계○ 훈계○		
9	복 무	연가일수 재산정 부적정	●●	시정	회수 15,447			
10	지 방 세	취득세(지식산업센터 감면 등) 부과 관리 부적정	◇◇	시정	추징 28,637			
11	지 방 세	재산세(건축물 구조) 부과 관리 부적정	△△	시정	추징 59,223			
12	지 방 세	주민세(사업소분) 부과 관리 부적정	◇◇	시정	추징 5,200			
13	세외수입	세외수입(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	시정	추징 3,500			
14	세외수입	세외수입 체납금 압류 관리 부적정	⊕⊕	시정				
15	세외수입	세외수입 독촉고지 발급 관리 부적정	⊕⊕, ⊞⊞	시정				
16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 부적정	ⓂⓂ	주의				
17	사회복지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 소홀	○○	시정			기관 경고	
18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부적정	▲▲	주의		훈계○		
19	사회복지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 업무 소홀	☆☆	주의				

(단위: 천원, 명)

연번	분야	제 목	관련부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경고	
20	사회복지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	시정	회수 1,924 추급 1,662			
21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소홀	○○ 외 2개 부서	시정	회수 1,700			
22	문화체육관광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미흡	**	주의				
23	문화체육관광	신고 체육시설업 보험가입 확인 소홀	☞☞	시정				
24	문화체육관광	관광사업자 보험가입 확인 소홀	**	시정				
25	문화체육관광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 관리 미흡	**	권고				
26	계 약	스마트 로봇주차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부당 관리 등	□□	주의				
27	계 약	전시체험공간 조성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부당 관리 등	▯▯	주의				
28	계 약	기후변화체험관 외벽리모델링 관급자재 부당 계약	▶▶			훈계○		
29	계 약	삼산2배수 펌프장 관급자재 구매절차 부적정	▯▯	주의				
30	예 산	예비비 집행 부적정	☆☆, **	주의				
31	회 계	여비 지급 소홀	●●, ☆☆	시정 주의	회수 220			
32	계 약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	권고				
33	기 금	기금 운용 부적정	☆☆ 외 6개 부서	시정 주의				
34	예 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부적절	☆☆	주의				
35	예 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소홀	◇◇	주의				
36	계 약	공사 및 물품 하자만료검사 미실시	☞☞ 외 7개 부서	주의				
37	회 계	공공예금 계좌 관리 소홀	◇◇ 외 4개 부서	시정	추징 342,986 추급 616,559			
38	회 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외 43개 부서	주의				
39	공유재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소홀	㉞㉞ 외 2개 부서	주의				

(단위: 천원, 명)

연번	분야	제 목	관련부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경고	
40	물 품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 절차 이행 소홀	☆☆	주의				
41	보 조 금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등 부적정	○○ 외 2개 부서	주의				
42	보 조 금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집행 부적정	○○ 외 2개 부서	시정 주의				
43	보 조 금	보조금 예산과목 편성 및 추진 부적정	○○	시정 주의				
44	보 조 금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실적보고서 미제출	○○	주의				
45	계 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부적정	ㄷㄷ, 〇〇	주의 개선				
46	계 약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ㄱㄱ	주의				
47	계 약	단일사업 분리발주 부적정	ㄱㄱ	주의				
48	토 목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 공사감독 소홀	ㄱㄱ	시정				
49	공원녹지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업무 소홀	▶▶	주의				
50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행정절차 미이행	ㄱㄱ, ⊕⊕	주의		훈계○		
51	토 목	건설공사(토목) 품질관리 업무 부적정	⊕⊕	주의				
52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공측량 절차 미이행	⊕⊕	주의				
53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검수 및 판매소 관리 부적정	ㄷㄷ	주의				
54	자원순환	폐기물처리신고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리 소홀	ㄷㄷ	시정				
55	환 경	환경분야 사업장 관리 소홀	ㄱㄱ	주의				
56	환 경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지도·감독 소홀	ㄱㄱ	시정				
57	토 목	도로점용허가대장 작성·관리 소홀	⊕⊕	시정				
58	토 목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감독 소홀	ㄱㄱ	주의				
59	토 목	주안변전소 내 유희부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감독 소홀	ㄱㄱ	시정 주의	회수 1,334			
60	토 목	공영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소홀	ㄱㄱ	시정				

(단위: 천원, 명)

연번	분야	제 목	관련부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경고	
61	재산관리	도로 기부채납 업무처리 소홀	⊕⊕, 日日			훈계○	기관 경고	
62	건축	기계식 주차장 관리 업무 소홀	☒☒	시정				
63	건축	위반건축물 발생 시 행정조치 미이행 등 업무 소홀	日日	시정				
64	보건위생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및 업소관리 소홀	☆☆	시정				
65	보건위생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범죄경력조회 일부 미실시	☐☐, ☒☒	시정 주의				
66	보건위생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업무 소홀	☐☐	주의				
67	보건위생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절차 누락	☒☒	주의				
68	공원녹지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및 종합보고서 처리 소홀	▶▶	주의				
69	공원녹지	백운근린공원 4단계 조성사업 추진 미흡	▶▶	시정 주의	회수 5,487			
70	공원녹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산출 업무 소홀	▶▶, ☆☆	주의 권고				
71	지역경제	무단폐업 공장등록업체 사후관리 소홀	ΩΩ	주의				
72	계약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승강기) 구매 검토 소홀	◇◇	주의				
73	공사	부평구 대로 가로등 보수공사 (연간단가) 감독업무 소홀	⊕⊕	주의				
74	교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소홀	☑☑	시정 주의				
75	공사	전기공사 지급자재 및 재입고 자재 관리 소홀	⊕⊕	시정 주의				

3. 처분요구서

※ 명세 별첨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 ◎◎◎

내 용

1.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소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¹⁾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²⁾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부평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20**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

1)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2)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권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매년 접근권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20**년에는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 점검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관리 소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이에 부평구 ○○○에서는 20**년 **월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현황 조사 및 점검 안내” 문서를 전 부서에 시행하였으나 ●●●에서는 20**년 **월 맞춤형 복지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도 제출하지 않아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 및 위탁사항이 미공개 되었고, ○○○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탁 운영하였음에도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미작성,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 위탁사항을 미공개 하였다.

또한, ○○○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함에도 부평구 홈페이지에 20**년도 위탁사항이 공개되어 있는 등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을 소홀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계약서 작성,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교육, 위탁사항 공개 등 위탁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립하거나 변경한 운영·관리 방침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발체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8조(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

※ 표준 개인정보보호 보호지침 발췌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는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누락되었고 일부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등이 실제와 다르게 게시되어 있으며, 보관기간, 보관장소, 접근권한자 등은 부서별로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탁 운영하고 있음에도 위탁사항에 누락되어 있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부평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인 ◇◇◇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등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20**년 이후 자체 점검한 사실이 없고, 그 결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에서 미흡하게 관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정비하시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추진하시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외 25개 부서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2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파기일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도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공문 등으로 명확한 목적 명시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을 통해 제공하도록 아래와 같이 준수사항과 기록·관리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개인

영상정보 제공 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를 회신하면 이를 기록·관리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회신을 독려하고 필요한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1. 신청서, 공문 등으로 명확한 목적 명시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 및 제공
2.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과 안전한 관리
3. 제공한 기관은 제공 사실에 대해 인터넷 등 공개 및 기록·관리
4.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파기 및 파기사실 통보

[기록·관리사항]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췌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는 자동 삭제의 경우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미기재, 신청서, 공문 등 자료요청 없이 열람, 열람 및 제공 기록 미기재, 제공한 이후 파기 결과를 문서로 회신 받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등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외 15개 부서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4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하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39조(안내판의 설치) 제1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①설치목적 및 장소 ②촬영범위 및 시간 ③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④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CTV 설치 안내 (예시)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종 복도(360° 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00과 홍길동 (032-000-0000)
- 수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32-000-0000)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췌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에서는 안내판 미설치, 안내판에 설치장소, 관리책임자, 촬영시간,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안내판을 소홀히 관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개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에 설치장소,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등 안내판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1. 보조금 교부조건 기재 미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및 조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사항

1.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³⁾할 수 있으며
2. 부정수급 행위 시 명단공표,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37조⁴⁾ 및 제38조⁵⁾에 따른 벌칙 등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고
3.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해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4.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i)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ii)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iii)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iv)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v)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부조건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기재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 □□□에서는 ‘☆☆☆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의 교부조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교부하였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법 미흡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 □□□에서 시행한 ‘20**년 ☆☆☆ 신청 안내’ 문서의 신청서식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목록에 일괄 서명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에 알려야 할 사항(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및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보주체에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았고, 그 결과 *개 동 *개 보조사업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미흡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부조건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기재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알려야 할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징계·훈계·주의 요구

제 목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승진 임용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징계대상자 ●●●(現 ▽▽▽) 지방*** (現 지방***)

●●● 지방*** (現 지방***)

징계종류 경징계

훈계대상자 ●●●(現 ▼▼▼) 지방*** (現 지방***)

●●●(現 ▲▲▲) 지방*** (現 지방***)

내 용

위 사람 중 ㄱ은 20**.*.*.*.부터 20**.*.*.*.까지, ㄴ은 2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⁶⁾ 인천광역시 부평구 ●●●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고, ㄷ는 20**.*.*.*.부터 20**.*.*.*.까지 부평구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ㄹ은 20**.*.*.*.부터 20**.*.*.*.까지 부평구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업무개요

부평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6) ㄴ의 ###업무 담당기간 : 20**.*.*.*.~20**.*.*.*. / 20**.*.*.*.~감사일 현재

- 20**.*.*.*.~20**.*.*.*. <<< 등

- 20**.*.*.*.~20**.*.*.*. <<<업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에 따라 매년 상시 학습제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반영하고 있으며, 20**. **. **부터 20**. **. **.까지 총 **회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에 따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 심사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은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되,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법정 의무교육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동일 연도 내 동일 과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교육훈련실적을 오류 및 부정 입력한 경우 교육훈련부서는 즉시 입력 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평구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고 동일직급에서 3년 이내에 동일과정을 중복으로 이수한 실적 또는 중복 입력한 실적 등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하여야 하며, 승진 임용 등의 경우 교육훈련 시간 충족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적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이 승진 심사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20**년 **월~20**년 **월 승진심사 시 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점검을 소홀히 하여 동일 직급내 중복 또는 오류 입력한 실적을 삭제하지 아니하였고, 중복·오류 승인 실적을 삭제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대상자인 口 등 *명이 각 의결일 기준 승진자로 의결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가. ㄱ, ㄴ의 경우

ㄱ은 교육훈련 미충족자 승진의결 대상자 중 口의 교육훈련 실적 점검을 담당할 실무담당자이고, ㄴ은 ㄴ, ㄷ의 교육훈련 실적 점검을 담당할 실무담당자이다.

위 사람들은 口 등 *명의 승진 임용에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교육훈련 실적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 대상자들이 중복으로 이수한 교육시간을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승진심사에 제외

되었어야 할 口 등 *명이 승진자로 의결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ㄱ은 문답조사를 통해 교육훈련 담당자로서 교육훈련 시간 미충족으로 승진심사에서 대상자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왔는데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며,

당시 결원 등으로 교육업무 외에 징계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인사업무 담당자의 갑작스런 병가로 인사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口의 경우 근속승진 대상자로 승진 전 직급에서 근속기간이 길어 모든 교육훈련 실적을 다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참작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ㄴ 역시 업무처리 미숙으로 교육훈련 시간 미충족자가 승진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하급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승진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승진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량도 증가하여 업무 처리가 미흡했던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감사에서 지적된 시기가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업무가 바뀐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심사에서 교육훈련 시간 충족 여부 확인은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서 업무상황, 수행기간과 관계 없이 교육훈련 담당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승진 임용 기회를

박탈한 행위이자 부평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징계)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ㄷ, ㄹ의 경우

ㄷ와 ㄹ은 각각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로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ㄱ 등 *명의 승진심사 시 심사대상 제외 사유인 교육훈련 시간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위 ㄱ 등 *명이 승진 의결되게 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징계] 승진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점검을 소홀히 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승진 의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위 ㄱ, ㄹ을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교육훈련 업무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위 ㄷ, ㄹ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징계·훈계·주의 요구

제 목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

징계대상자 ●●● 지방*** ○

■■■ 지방*** (現 지방***) ㄷ

징계종류 경징계

훈계대상자 ●●● (現 ■■■) 지방*** (現 지방***) ㄷ

■■■ (現 ■■■) 지방*** ㄷ

내 용

위 사람 중 ○은 20**.*.*.부터 20**.*.*.까지, ㄷ는 20**.*.*.부터 20**.*.*.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에서 각각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 및 부평구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ㄷ은 2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ㄷ은 20**.*.*.부터 20**.*.*.까지 각각 인천광역시 부평구 ■■■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 및 부평구 ■■■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 채용업무 부당 처리

부평구는 ♡♡♡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 ‘20**년 제*회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수립하여 공고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20**. **. **. A 등 *명을 지방*** (일반임기제)로 임용하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제5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평구에서도 위 채용시험 공고7)에 ‘관련 경력이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이라고 공고하였다.

따라서, 부평구에서 경력을 기준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분야 실무 경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경력 퇴직일이 시험공고일 기준 3년이 경과된 사람은 서류전형에 합격시켜서는 아니된다.

한편, 부평구에서는 위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경력사항 적격 및 기간인정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20**. **. **. 내부위원 *명과 외부위원 *명8)으로 구성된 서류(경력)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위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응시자 중 A의 서류(경력)평가 심의 결과 관련분야 실무경력으로 인정된 최종 경력 퇴직일이 20**. **. **. 일로 시험공고일 기준 *년 *개월이

7) 20**년도 제*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인천광역시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호, 20**. **. **.)

8) **** 대표 E 등

경과되어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자임에도 서류전형에 합격시켰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A가 면접심사를 거쳐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종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가. ○의 경우

○은 위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공고, 원서접수, 응시자의 경력 등 자격요건 확인, 서류(경력) 평정 심의회 진행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한 실무담당자이다.

○은 위 채용시험 서류(경력) 평정 심의 결과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된 위 A의 최종 경력이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위 A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보고하였다.

그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 A가 면접심사를 거쳐 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종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대해 ○은 문답조사를 통해 당시 위 A는 최종경력 기준 3년 미경과자로 확인이 되어 서류(경력) 평정 심의대상이 된 자로 서류(경력) 평정 심의회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하다 보니 A의 상근 외 비상근 경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이며,

위 채용시험 서류(경력) 평정 심의회에서 ‘부’로 심의한 경력이라도 관련분야 실무경력으로 불인정한 것은 아니며, 위 A와 유사한 위원 경력 등 비상근 경력을 제출한 다른 응시자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된 점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과 함

께 심의회 운영이 미흡한 것이지 부적격자가 채용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업무를 담당한지 *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을 진행하다 보니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目目目 분야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인정범위가 ㄱㄱㄱ 경력까지 포함되어 경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채용시험 서류(경력) 평정 심의회는 응시자의 ㄱㄱㄱ 등 비상근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를 정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위 채용시험 서류(경력) 평정 심의 결과 인정되지 않은 경력을 관련분야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징계)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ㄱ의 경우

ㄱ는 위 ㄴ의 직근 상급자이자 위 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와 관련한 실무책임자로서 실무담당자가 보고한 서류전형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할 대상자가 면접심사를 거쳐 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종 임용되게 한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ㄱ 역시 문답조사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서류(경력) 평정 심의 절차 상의 문제이지 부적격자가 채용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ㄴ과 같은 사유로 의견 또한 타당하지 아니하다.

2. ㉿㉿㉿ 채용업무 부당 처리

부평구 ㉿㉿㉿은 ㉿㉿㉿ 지원을 위한 ㉿㉿㉿을 채용하기 위해 20**. **. **. 공고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20**. **. **. B 등 *명을 지방*** (일반임기제)로 임용하였다.

㉿㉿㉿ 채용시험 공고⁹⁾ 6. 응시원서 접수 ‘응시자 제출 서류’에 따르면 응시 자격요건인 ‘관련분야 경력’ 확인을 위해 응시자는 근무기간, 부서, 직책,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 연락처, 날인(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관련분야 경력인지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5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9) 20**년도 제*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인천광역시부평구 ㉿㉿㉿ 인사위원회 공고 제20**-**호, 20**. **. **.)

되어 있다.

따라서, 부평구 ■■■에서는 서류전형 심사 시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에 대해 근무기간, 부서, 직책,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경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토록 해야 하고, 추가서류를 통해서도 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 ■■■에서는 응시자 중 ㅌ이 제출한 경력 중 ‘○○○ 참여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서류보완, 사실확인 등 조치 없이 근무시간, 담당업무, 직책 등이 명시되지 않은 연구과제참여확인서(기관의 직인 없이 연구책임자의 사인 날인)를 근거로 해당 경력을 인정하여 위 대상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켰고,

위 경력을 제외하는 경우 최종경력의 퇴직일이 20**. **. **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종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가. ㅌ의 경우

ㅌ은 위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공고, 원서접수, 응시자의 경력 등 자격요건 확인, 서류전형 심사 진행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한 실무담당자이다.

ㅌ은 위 채용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면서 위 C이 경력증명서 대신 제출한 연구과제참여확인서에 근무시간, 담당업무, 직책 등이 명시되지 않아 위 채용시험 공고에서 정한 증명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서류보완, 사실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하여 서류전

형 심사위원회에게 제공하였다.

그 결과, 서류전형 심사에서 C의 위 경력이 인정되어 서류전형에 합격되었고, 위 경력을 제외하는 경우 최종경력 퇴직일이 20**.*.*.**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자가 면접심사를 거쳐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종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츠은 문답조사 시 ⊖⊖⊖에서 발급한 위 C의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 서류에도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담당업무 및 주당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C의 ⊖⊖⊖ 외부참여연구원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츠은 당시 연구과제 참여에 대해 따로 경력증명서가 발급되는 지 잘 몰라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못했고, ▣▣▣ 인사 업무를 처음 진행하고, 관련 업무를 한번에 처리하다 보니 업무 처리에 부족함이 많았으며, 다만 당시 경력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적격자로 확인될 수 있는 대상자가 부적격자로 확인된 것이지 C을 채용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처리한 점을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있어 경력 증명서류 확인은 채용 공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바, 응시자가 공고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야 마땅하다.

따라서, 위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징계)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ㄱ의 경우

ㄱ은 위 ㄷ의 직근 상급자이자 위 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와 관련한 실무책임자로서 응시자 제출 서류 및 실무담당자가 작성한 서류전형 심사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최종경력 퇴직일이 퇴직후 3년이 경과되어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할 대상자가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임용되게 한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ㄱ은 문답조사에서 경력 증명서류를 보완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당시 C이 학력 또는 자질 등이 우수하고 다른 하자가 없어 ‘연구참여확인서’로도 충분히 경력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것이며, C이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 C이 자격이 없다는 감사 지적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것으로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외 학력, 자질 등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 C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 사람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징계] 서류전형 심사 결과 검토를 소홀히 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배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위 〇을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직근 상급자이자 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 실무책임자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위 ㄷ 및 ㄱ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장은

[징계] 응시자의 경력 증명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배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위 ㄱ을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징계·훈계·주의 요구

제 목 공무직근로자 채용업무 부당 처리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징계대상자 ●●●(現 □□□) 지방*** (現 지방***) ㄷ

징계종류 경징계

훈계대상자 ●●●(現 ◎◎◎) 지방*** ㄷ

내 용

위 사람 중 ㄷ은 20**. **. **.부터 20**. **. **.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에서 공무직근로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고, ㄷ는 20**. **. **.부터 20**. **. **.까지 부평구 ●●●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는 사용부서인 ⊕⊕⊕의 채용 요청을 받아 채용계획을 수립 및 공고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인성검사 포함)를 거쳐 20**. **. **. D 을 ®®으로 임용하였다.

2. 관계법령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채용 절차)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평구는 위 채용시험 공고¹⁰⁾에 서류전형 선발인원은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이상일 때에는 가산특전을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를 선발하되, 가산 특전 대상자가 채용인원 5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가산점 미부여자 동점 처리 기준에 따라 ① 주민등록상 인천 부평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②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많은 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공고하였다.

또한, 위 채용시험 가산특전 대상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는 근무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발급기관 직인, 담당자 확인 및 연락처 포함), 경력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가산점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공고하였다.

따라서, 부평구에서 위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자로부터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경력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력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10) 20**년도 제*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공고(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호, 20**.**.**.)

3.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위 채용시험 응시자 중 D이 경력증명서가 아닌 병적 기록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가산점 증빙서류로 갈음하여 인정하였으며, ‘토목 및 하수도 분야’ 근무 경력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병적기록표에 ㉸㉸㉸ 담당으로 복무한 기록이 있다는 사유로 서류 보완 등 조치 없이 가산점 5점을 부여하여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그 결과,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가산점 미부여자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합격순위 5위로 합격했어야 할 대상자 E이 불합격되었고 서류전형 불합격자인 위 대상자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부평구에서 감사기간 동안 D의 경력증명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경력 증명서도 병적기록표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D의 ‘토목 및 하수도 분야’ 근무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가. 표의 경우

표은 위 공무원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공고, 원서접수, 응시자의 경력 등 자격요건 확인, 서류전형 심사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한 실무담당자이다.

표은 위 채용시험 서류전형에서 위 D이 공고에서 정한 경력 증명 서류인 경력(재직)증명서가 아닌 병적기록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조치 없이 경력증명서로 갈음 인정하였다.

또한, D이 제출한 병적기록표에 ‘토목 및 하수도 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D에게 가산점 5점을 부여하였고, 합격순위 1위로 서류전

형 심사표를 작성하여 채용부서인 ⊕⊕⊕의 담당자, 팀장, 과장의 확인을 받아¹¹⁾ 20**. **. **. D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보고하였다.

그 결과,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합격순위 9위로 탈락했어야 할 D이 1위로 합격하였고, 면접심사를 거쳐 공무원근로자로 최종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대해 표은 문답조사를 통해 당시 병적기록표를 경력증명서로 갈음·인정한 것은 병무청, 고용노동부 및 채용의뢰부서인 ⊕⊕⊕에 유선으로 확인¹²⁾하여 인정한 사항이고, 병적기록표에 D이 ⊗⊗⊗ 담당으로 근무한 기록이 있어 가점을 부여하였으며, 꼼꼼히 확인했어야 하는데 채용업무 경력이 많지 않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거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채용시험 가점 부여에 관한 사항은 공고에 따라 부평구 ●●●에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토목 및 하수도’와 ‘건축 공사’은 업무 분야 및 내용 면에서 명백히 다른 분야로 위 경력으로 가점을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징계)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트의 경우

트는 위 표의 직근 상급자이자 위 공무원근로자 채용 업무와 관련한 실무

11) 표은 문답조사에서 채용부서 ⊕⊕⊕의 담당자, 팀장, 과장은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아니며, 서류전형 심사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12) 채용의뢰부서인 ⊕⊕⊕는 감사기간 중 경위서를 통해 당시 ●●●의 유선통화에 ‘직업군인으로서 토목 및 하수도 분야의 경력이 있다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부서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 증명서 등의 상세 내역 확인은 불가능했다는 의견을 제출함.

책임자로서 실무담당자가 보고한 위 채용시험 서류전형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할 대상자가 면접 시험을 거쳐 공무원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게 한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트는 문답조사에서 응시자가 제출한 병적기록부 및 경력증명서로 '토목 및 하수도 분야'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고, 업무 처리가 미숙했던 거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징계] 부적정한 가점 부여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할 대상자를 합격시켜 최종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위 포을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직근 상급자이자 공무원근로자 채용 업무 실무책임자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위 트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연가일수 재산정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연가 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로 최대 21일의 연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1]과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하고 있다.

[표1]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
최대 13일	최대 20일	최대 20일

※ 자료출처 : 부평구 제출자료 재구성

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¹³⁾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표2]와 같이 해당 연도 중 사실상

13)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의 그 휴직기간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하며, [표2]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2] 연가일수 재산정 계산식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text{(12개월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 자료출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발취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에 따르면 연가일수(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한 결근일수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평구에서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표2]의 계산식 따라 연가일수를 재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규정 제7조의10(연가의 저축)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
- ②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 ④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 ⑤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편·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 ⑥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표2] 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저축 연가에서 차감하며 저축연가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20*년~20**년 연 15일을 초과한 병가사용자, 휴직자, 장기교육 파견자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재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연가일수를 과다·과소 산정하였다.

그 결과, 총 7,114,440원의 연가보상비가 과다지급되었으며, 총 8,332,710원의 봉급일액이 감액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7,114,440원과 봉급일액 미감액분 총 8,332,71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취득세(지식산업센터 감면 등)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및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관리 부적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평구 ◇◇◇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번지 ***호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매각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취득세 등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등 16,428,890원을 과세 누락 한 사실이 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리 부적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평구 ◇◇◇에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생애최초 주택자에 대하여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에 따른 전입신고 및 계속하여 거주하는 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번지 **동 **호 등 *개 부동산의 취득세

등 6,085,120원을 과세 누락 한 사실이 있다.

3. 건축물 증축 등 취득세 관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평구 ◇◇◇에서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동 **~**번지 공장 증축 등 *개소의 취득세 등 3,785,130원을 과세 누락 한 사실이 있다.

4. 위법건축물 등 취득세 관리 부적정

「지방세법」 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임시건축물의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평구 ◇◇◇에서는 위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동 **-**번지 등 *개소의 취득세 등 2,338,830원을 과세 누락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된 지식산업센터 감면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 28,637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재산세(건축물 구조)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매년 6월 1일 기준 납세지에 소재하는 부동산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당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하여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7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시가표준액 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등의 사항을 적용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시가표준액에 해당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에서는 재산세 건축물의 구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적용 산정하여 부과해야 함에도 ○●동 **-**번지 등 *개소의 *건 재산세 등 59,223,050원을 부과 누락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된 건축물 구조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 59,223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주민세(사업소분)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과세기준 일 7월 1일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하여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주민세 “재산분”은 구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를 세율로 적용하며,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매년 7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주민세 재산

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분부터 사업소분의 세액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80조와 제82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에서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E 등 *개 사업장에 대한 20**년 주민세 사업소분 *건, 5,200,440원을 과세 누락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된 사업소분 주민세 등에 대하여 5,2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세외수입(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함께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전통지한 감경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감경되

기 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에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에서는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어 본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F 등 *명에 대한 과태료 3,500,000원을 미부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본 부과되지 아니한 과태료 3,50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세외수입 체납금 압류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 등에 대하여 세외수입 체납금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을 말하며,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독촉) 및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독촉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미납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로사용료 등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신속한 체납처분¹⁴⁾을 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 부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로 재산을 적극적으로 조회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조치 하여야 함에도, 체납자 *명, 체납액 31,424,740원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4) 납세자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으로서 독촉, 재산압류, 매각 및 청산의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짐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점용료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조속히 압류하시기 바라며, 체납처분의 절차로 재산을 적극적으로 조회하는 등 체납처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세외수입 독촉고지 발급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

내 용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세외수입 도로점용료 등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독촉)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및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8조(독촉) 제1항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

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서는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도로사용료 등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 ⊞⊞⊞ 등 *개부서에서는 세외수입금 납부기한 미납부자에게 체납처분의 첫 단계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총 *명, 9,486,350원의 점용료 등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 총 *명, 9,486천 원의 점용료 등에 대하여 조속히 독촉장을 발급하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체납처분의 첫 단계인 독촉장 발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①①①

내 용

부평구에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신고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5,378백만원(** 기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뜻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라 적정하게 접수·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이와는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에 속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3명 이상 다자녀 가족 및 맞벌이 가정에 속하는 일반아동 외에 총 정원의 60% 이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가정,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정,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취약아동을 이용아동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고, 이용아동으로부터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아동에 한해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월 5만원 한도 내에 수납 가능하며, 수납 시 반드시 해당 아동의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 시에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침에서는 후원금 관리 분야의 ‘후원 제한’사항으로 이용 아동의 60% 이상이 돌봄취약 아동인 만큼 이용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물품)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명시하였고, 2022년도 지침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내 후원금 모금 불법행위가 발생 되지 않도록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 기간인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부평구 지역아동센터 *개소 후원금 모금현황을 확인한 결과, *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설 이용아동 *세대, *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부평구 지역아동센터의 후원금 모금 부적정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지침 개정 전인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년간 부평구 지역아동센터 *개소에서 이

용 아동 보호자 및 이용아동으로부터 104,914천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지침이 개정된 2022년 이후에도 *개 지역아동센터에서 51,186천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으며, 세대별 후원 규모는 월 10천원부터 100천원씩 지속적으로 모금되거나, 일부 후원자의 경우 월별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후원한 것 이외에, 100천원, 250천원, 300천원, 820천원을 일시금으로 후원하였으며, 이와 같이 정기 및 일시금 형태로 후원자에게 모금된 개별 후원금 총액 중 1,000천원 이상인 자는 *명에 이르며, 개별 모금액 중 최대금액은 3,240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후원금 모금은 결국,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호·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역아동센터가 센터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부평구 ㉠㉠㉠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지역아동센터의 이 같은 후원금 모금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부평구 ㉠㉠㉠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원금 관리 의무를 주지시켜 왔으며, 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지침상 이용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 모금은 불법행위가 아닌, 가급적 지양토록 한 바, 이 기준만으로 20**년과 20**년 후원금 모금 관리의 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관련지침에 명시된 바 같이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지역아동센터의 이러한 역할수행을 위해 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을 국시비 매칭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의 주된 이용아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돌봄 아동과 한부모·조손가정, 보호자의 실직·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임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용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후원금 모금이 제한되도록 조치하여 후원금 모금에 따른 이용아동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후원금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시, 후원금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구두 상으로 주지시키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별 이용아동 및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 모금 세부현황 파악 및 점검 결과에 따른 후원제한 권고 조치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어야 하는 바, 위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아동 및 이용아동의 보호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불법행위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기관경고

제 목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부평구 ○○○에서는 등록장애인의 장애 상태 확인 등 재판정기한 도래자의 의무적 재판정 업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로부터 분기별로 통보되는 사항을 등에 안내하고, 재판정기한 경과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시에 제출하는 등 재판정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등록 장애인의 장애 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재판정 기한 3개월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기한 내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판정기한 1개월 전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되, 다만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거주불명 등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유예기간이 설정되지 않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기간 등 충족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해 최소한으로 재판정 유예설정을 결정토록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정유예 대상이 아님에도 촉구기한 내에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에 근거하여 청문시작 10일 전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의견제출에 필요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고려해 우편 또는 교부 방법으로 송달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함은 물론,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발송방법, 발송 연월일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청문실시 결과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청문결과 결정(장애인등록 취소)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반환기한 2주 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고, 반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평구에서는 장애인 재판정 예정자 안내(통보) 소홀, 재판정 기한 경과자 발생 및 기한 경과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청문 실시, 장애등록 취소 등 행정절차 미이행의 부적정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 바, 재판정 예정자 및 기한 경과자의 업무처리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독려는 물론, 부적정 혹은 미처리 대상자에 대한 조치 안내, 단계별 추진 절차 이행 여부 관리 등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관리현황 확인 결과, 재판정 (촉구) 미통보 및 통보지연, 기한 내 재판정 미이행자에 대한 재판정 지연처리, 재판정 미이행 등 부적정 사항이 확인되었다.

부평구의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부적정 처리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 등 *개 동에서는 재판정 기한이 도래한 등록 장애인 F 외 *명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 혹은 촉구 통보를 하지 않았고, □□동 등 *개 동에서는 재판정 기한 도래자 G 등 *명에게 재판정 및 촉구 통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동 등 *개 동에서는 재판정대상자 H 외 *명에게 재판정 기한 3개월 전, 혹은 1개월 전 해야 할 촉구 통보를 통보기준일로부터 *일에서 최대 *일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시행하였다.

그리고, 부평구 ○○○에서는 장애진단 대상자의 재판정유예를 해외체류, 입원 치료, 천재지변, 수감 등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만 처리가 가능함에도, 병원예약 지연, 재판정 기한 내 서류제출 불가 등을 이유로 대다수의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를 유예결정 처리하거나, 재판정 통보 및 접수 누락 등의

사유로 재판정 유예를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유예결정 시점 또한 유예기간 시작 일을 경과 한 이후에 소급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재판정기한 경과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 사전통지, 청문 실시, 장애등록 취소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에도, ❖❖동 외 *개 동에서는 재판정 기한 경과자 *명을 청문 등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대상자가 재판정 자료를 제출한 뒤늦은 시점에 재판정 처리를 하였는데, 특히 □□동, ○○동, ○○동에서는 장애 재판정기한일 경과자 I, J, K에 대해 장애등록 취소 등 사전절차 추진 없이 재판정기한일로부터 *일, *일, *일이 경과된 시점에 뒤늦게 재판정 처리되었다.

이뿐 아니라, 장애인등록취소 처리자 L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실시 전, 행정기관의 공문결재를 거쳐 직인이 날인된 처분사전통지(청문 실시통지)와 의견제출서를 통보해야 하나, 사전통지 관련 공문결재 없이 청문실시 후 장애등록을 취소처리 하였고, ★★동 M 등 *명은 재판정기한일로부터 부평구 종합감사일(20**, **, **)까지 *일~*일이 경과될 때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른 등록취소 절차 및 재판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부평구 ○○○에서는 재판정 기한 경과자에 대한 절차 이행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① 재판정 기한이 경과된 N 등 *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등 업무처리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②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에 대한 재판정·촉구 통보 등 일련의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에 소홀함이 있어 기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바 엄중 경고하오니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훈계대상자 ▲▲▲ 지방** c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경우, 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 I. 수급자 신청 - '4. 신청절차 (라. 신청접수), 8. 급여종류별 새올 민원접수 및 등록' 에 따라 읍·면·동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관련문서를 받아 시스템에 신청 등록하며, 군·구에서는 교육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새올 민원접수 및 등록 등 민원처리를 군수·구청장이 처리해야 함을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즉시 접수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민원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 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는 바, 만일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추가 보완요구와는 별개로, 접수받은 신청정보 및 제출서류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급여신청일의 자동 부여는 물론, 서울민원행정시스템에 급여종류별로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가 자동부여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군·구의 통합조사 담당부서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접수 즉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바,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등 조사대상 확인 단계를 거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을 포함한 공적자료 조회를 요청하여 조회된 자료를 우선 적용하되, 신청인이 해당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료등록 후 수정결과를 적용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접수된 민원 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를 하였을 때 지체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통지해야 하되,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권

자가 군·구에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 즉 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며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로 책정된 날부터 개시되는 바,

군·구 통합조사 담당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서류의 등록·접수, 공적자료 등 조회요청 및 결과반영, 생활실태조사, 결과 처리 등 일련의 절차를 지체 없이 수행하여 최저생활보장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급여가 적기에 지원 되도록 조사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특히 급여신청에 따른 신청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접수·조사 업무 주체인 구가 이원화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새올민원행정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평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청서접수, 자료조사 요청’ 등 절차이행을 지연 처리함에 따라 생계곤란 등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조속히 제공되어야 할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뒤늦게 지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신청조사 부적정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평구 ▲▲▲ **팀에서는 군·구에서 접수 처리해야 할 급여 신청서류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일을 확인한 결과, ○ 등 *명의 신청서류가 신청일로부터 *일~*일이 경과된 시점에 접수된 후, 구 **팀으로 이송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조회요청 되어야 할 공적자료조회(금융재산 조회 포함)요청, 주택조사 요청 지연과 맞물려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자료회신이 지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부평구 ▲▲▲ **팀에서는 법정처리기한 내 조사결정을 위해 적기에

조회 요청해야 할 공적(금융포함)·주택조사 자료를 공적자료의 경우 *일~*일(*건), 금융자료의 경우 *-*일(*건), 주택조사는 *-*일(*건) 경과 시점에서야 요청함에 따라, 요청이 지연된 만큼 생계곤란 저소득가구의 급여결정 시기 또한 지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급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즉,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의 조사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해야 하고, 추가 확인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법정처리기한 내 조사처리 되도록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정일에 민원완료 처리를 해야 함에도,

P 등 *명의 급여 신청 건의 경우, ‘새울 민원행정시스템 - 민원처리 - 민원 진행상황처리 - 처리기한연장’에서 민원처리기한을 30일씩 *회 연장처리되었는데, 구체적인 처리기한 연장사유를 확인한 결과, 조사담당자의 기관(금융포함) 자료 조회요청 시 지연으로 결과처리가 늦어졌거나, 관련기관으로 기 요청된 자료가 이미 회신 되었음에도 새울시스템 상 ‘금융 및 기관회신지연’으로 사실과 다르게 연장사유를 등록하고 민원처리기한을 부적정하게 연장처리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Q, R, S, T에 대하여는 법정처리기한 내 조사결정 처리를 위해 지체없이 해야 할 보완요구를 수급자의 급여신청일로부터 *일~*일이 경과되는 시점에서야 서류보완을 사유로 보완보정처리 하였으며, 급여신청자 U 등 *명은 급여신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조사결정 *일~*일 이전 새울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처리 완료로 입력처리 하였는데, 특히 급여신청자 중 V,

W, X, Y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일로부터 *일, *일, *일, *일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책정되었음에도 민원처리 기한 내에 결정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전산에 등록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부평구 ▲▲▲ **팀에서는 수급자 신청에 따른 접수·조사 등 절차를 지연 처리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 *명의 수급자 선정이 신청일로부터 *일~*일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명에 대한 급여 지원 또한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들 중 *명은 생계급여와 동시에 의료급여를 신청한 대상자로, ‘급여 신청일’부터 급여가 개시되는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급여 선정일’에 개시되는 만큼 의료급여 선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부적정한 조사절차 추진으로 의료급여 선정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질병·부상 등 의료서비스 제공 시점 또한 늦춰지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훈계**] 위 대상자 c를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훈계처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부적정 처리건수 및 지연처리 세부내역 등 검토사항을 토대로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가 이행되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하며,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간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자를 조건제시유예자로 결정하는 바, 조건제시유예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예외적으로 군·구 담당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결정한 대상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제시유예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2월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만 20세 미만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생 및 만 20세 미만의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시험 응시 등 시험준비생,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이나 기타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건제시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이에 해당되며, 「자활사업 안내」에서 각 대상자별 선정기준 및 제출(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관련지침을 근거로 이에 대한 확인·조사결과를 통해 조건제시유예를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군수·구청장이 조건제시유예 대상자로 결정하는 자, 그 첫 번째는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이 의심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로,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두 번째 대상자는 단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연 2회까지 1회 최대 3개월간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 가능하나, 다만 이 경우에는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소견서 중 하나를 제출하되, 진단서의 경우 치료(예상)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병명, 치료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활동 및 근로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 곤란자 세 번째 기준은 계절적으로 질병악화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진단서가 아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고, 위 세가지 기준에 따른 조건제시유예자 선정을 위해서는 각각의 증빙서류와 함께 사실확인조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 ☆☆☆의 질병·부상 등 사유에 따른 조건제시유예자 선정현황을 확인한 결과, 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건에 한해 적용되어야 할 조건제시유예가 담당자 직권으로 결정처리 되거나, 제시유예기준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소홀, 사실확인조사서 미작성, 유예기간 결정 부적정 등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조건제시유예자 선정에 따른 부적정 처리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건

제시유예자는 군·구 담당자의 확인·조사결과를 토대로 군수·구청장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부평구에서는 Z 외 *명(총 *건)을 조건제시유예자로 결정 시, 내부결재 없이 담당자 직권으로 결정처리하였는데, 이들 중 Z·q은 20**년부터 *년간 총 *회, w·e은 20**년부터 *년간 총 *회에 걸쳐 담당자 직권으로 유예결정 처리되었다.

특히, 직권처리된 *건은 진단서·소견서상 치료(예상)기간이 *일~약 *주간 치료를 요함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일괄 적용하여 결정하였고, *회에 걸쳐 결정 처리된 Z, q의 경우에는 *년간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단일만 달리하여 제출한 진단서에 치료의견 등에 별다른 변경내용 없이 유사질병에 대한 *주~*주 안정가료 요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들 역시 3개월의 조건유예를 적용하였고, 또 다른 직권처리 *건의 경우에는 제출서류상 치료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지 않음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조건제시유예자 결정을 위해서는 각 증빙서류와 함께 사실확인조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지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조건제시유예결정된 대상자 *명 모두 담당자의 사실확인조사서 제출없이 결정처리 되고 있으며, 증빙자료로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병명,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외에 활동 및 근로가능 여부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될 경우 제시유예자로 선정해야 하나,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자 *명의 세부내역 확인결과, 구체적인 치료(예상)기간, 활동 및 근로가능 여부 등이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1회 최대 적용할 수 있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모두 적용하여 결정처리 하였다.

또한, 부평구 ☆☆☆에서는 조건제시유예결정을 위한 내부결재 시, 조건제시유

예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유예사유, 유예기간, 제출자료명 등이 기재된 엑셀서식 외에 유예선정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와 사실확인조사서 첨부 없이 결재처리 되고 있으며, 특히 r의 경우 20**. **. **. 내부결재 시, 진단서가 증빙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보고되어 결재처리되었으나 감사기간 중 관련자료 확인결과, 제시유예신청자 r의 유예처리 적격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 서류가 제출·검토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결정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① 조건제시유예 기준 조사 시점에 진단·확인됨을 증빙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진단서 등 제출서류와 사실확인조사서를 토대로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한해 단기적으로 조건제시유예 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여 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하여 생계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부터 전액 지급하되, 그 지급일은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정기 지급하고, 만일 수급자의 보장결정일이 급여자료 생성 기준일인 매월 15일 이후이거나 계좌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생계급여가 신속히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구에서는 급여 지급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된 급여내역에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 해당 급여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4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하되, 만일 생계급여 신청자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은 수급 신청자의 연금 수령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실제소득으로 반영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자가 생계곤란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여 「긴급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동시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 결정전까지 우선적으로 긴급지원이 가능하며, 추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결정되어,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는 기초생계급여와 우선 지원 긴급지원금과 생계급여를 비교하여 해당 월의 긴급 생계지원액이 기초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긴급지원금만 지급하고, 긴급지원금이 생계급여보다 적으면 차액분의 생계급여가 추가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착오 없이 급여가 지급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만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법령·지침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군·구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가 있을 경우 군·구에서는 이를 소급 지급해야 하고,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평구 기초생계급여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평구 ☆☆☆에서는 기초 및 긴급 생계지원 동시 신청자에 대한 급여 착오 산정, 가구원 추가신청

수급자 생계급여 소급지급 소홀 등으로 인해 *건의 급여가 과소 혹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생계급여 부적정 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평구 ☆☆☆에서는 기초 생계급여와 긴급 생계지원을 중복 신청한 자에게 선 지급된 긴급생계지원비를 차감하여 기초 생계급여를 지급하면서 수급자 t, y에게 지급되어야 할 생계급여를 착오 산정하여 1,248,891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수급자 u 등 *명에게는 생계급여 770,122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기존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가구원을 추가하여 생계급여를 신청한 i 등 *명에 대하여는 가구별 월별 소득인정액을 반영하여 신청 월부터 책정 월까지 소급지급해야 할 급여를 착오 산정함에 따라 생계급여 412,840원이 과소 지급되거나 1,154,114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과다 지급된 생계급여 1,924,236원은 회수하시고, 과소 지급된 생계급여 1,661,731원에 대하여는 지급 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생계급여 과소·과다 지급 등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 ***

내 용

1.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는 바, 후원금 기탁서에 구체적인 지정 용도가 재무·회계규칙 [별표]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되도록 해야 하고, 그 외에 용도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거나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하여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비로 일부 사용할 수 있으나, 간접비 중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메뉴얼(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사용내역 입력은 물론 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군·구에 보고해야 하는바, 후원자별 입금목적(지정후원금 용도 등), 계정과목(지정·비지정후원금), 후원금액 등 수입과 후원금 사용 내역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명확히 등록·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이 용도에 맞게 구분되어 시스템에 명확히 등록·관리되고 있는지와 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사용내역 확인결과, 사회복지시설 *개소에서 후원금 1,699,554원을 업무추진비 성격의 기관운영비 용도로 부적정하게 사용함에 따라 후원금의 명확한 집행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세출예산과목 편성·집행 부적정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 [별표4], [별표6]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하는 바,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실장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자산취득비로 계산)·도서구입비·광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은 ‘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로 편성하며,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로 편성하고 지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집행내역 확인결과, 사회복지시설 *개소에서 선 물구입비, 회식비 등을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해야 함에도 기타운영 비, 기타후생경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소모품 및 차류 구입비 등은 수용비 및 수수료 목이 아닌, 영양관리사업비, 기타운영비 등으로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 지출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3. 후원금 세입·세출처리 누락 등 결산처리 부적정

재무·회계규칙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은 재무·회계,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하여 건전하게 운영 되어야 하고,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누락됨 없이 예산에 모두 계상하여야 하되,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1]~[별표4]의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은 업무의 효율화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축된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예·결산 내역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 내역 등을 등록·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결산보고서를 군·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 제출 시 소규모시설이 아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조까지의 서류 (세입·세출결산서, 과목 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

명세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인건비·사업비명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중 후원금 수입명세서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후원 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 세입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수입명세서 뿐 아니라, 후원금 사용명세서 등록관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후원금 수입·사용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보고자료에 세입·세출내역이 명확히 반영·작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 바, 만일 부적정한 회계처리 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출된 보고문서를 ‘반려’ 처리하여 시설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보완 제출된 보고서를 재검토해 회계처리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승인’ 처리하여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에 따라 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3개월 동안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 감사기간 중 20**년부터 20**까지 보고된 사회복지시설 *개소의 후원금 결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연도별 후원금 결산 세입·세출 처리 누락, 예산 과목 착오 반영 등으로 당해연도 결산서 상 후원금 잔액(세입-세출)과 차기 연도로 이월된 ‘전년도이월금(후원금)’의 차액이 발생 된 채 결산서가 보고되었고, 후원금 수입 발생일자 및 사용일자 별로 모두 기록하여 보고되어야 할 후원금 수입·사용명세서 내역이 누락 제출되었음에도, 부평구 ○○○, ⊕⊕⊕, ★★*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고된 연도별 결산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자료를 승인하여 해당 자료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완되지 않고 불부합이 발생된

자료 그대로 공시되는 등 후원금 회계처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이 금번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결산 내역 불부합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평구***에서는 20**년 지정후원사업 발생이자수입(3,057원) 및 20**년 지정후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1,591,771원)이 당해연도 세입·세출에서 누락되었고, 부평###에서는 20**년 후원금 세입액 중 지정후원금, 이월금(법인전입금(후원금),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잡수입 등 32,913,970원과 후원금 세출액 21,307,760원을 누락 하였으며,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 관리하고, 결산보고 시, 첨부 제출되어야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의 후원금 수입명세서상 57,160,065원에 대한 수입 명세 내역이 누락 된 채 보고되었고, 20**년과 20**년 결산서에는 법인전입금(후원금)이월액 2,036,446원과 439,146원을 각각 누락 함에 따라 후원금이월액의 불일치가 발생되었다.

또한, 부평구\$\$\$에서는 20**년 결산서 보고 시, 이월된 법인전입금(후원금) 402,672원을 법인전입금 22,978원에 포함하여 세입처리 하였고, 후원금 수입·사용명세서 제출 시, 법인전입금(후원금) 세입 14,422,470원과 법인전입금(후원금) 세출 11,719,33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누락 제출하였으며, + + +와 + + +에서는 20**년 후원금 결산 시, 보조금 수입 3,000,000원과 캠프비 등 240,616원을 지정후원금으로 착오 반영하였고,

+ + +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재무·회계규칙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히 용도가 지정된 후원금을 제외하고 후원목적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거나 후원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등의 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하여 세입처리 해야 하나 후원금 전액을 지정후원금으로 일괄 등록하였고, 20**년 전년도이월금(후원금) 28,284,692원을 후원금 세입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후원사업 이자수입과 인건비 등 세출액의 자금 원천을 후원금이 아닌, 자부담으로 등록하는 등 부적정하게 결산처리를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① 사회복지시설 *개소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기관운영비 용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후원금 1,699,554원을 시설회계 후원금계좌로 반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후원금 세입·세출의 편성·집행은 물론,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명확히 반영해 보고·공개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에 대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 *

내 용

부평구 * * *에서는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 만료(20**.*.*.**) 예정에 따라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위탁 관리·운영에 대해 부평구* * *에 재위탁하며 위탁기간은 20**.*.*.부터 20**.*.*.(*)년까지로 하는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위탁 관리·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였다(20**.*.*.)’.

1. 판단기준(관계법령)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및 지원)에 따르면 “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조례 제14조(위탁기간)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중 최근 평가에서 적정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에서는 위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위탁 관리·운영 계획(안)”을 근거로 위·수탁 계약 체결없이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을 재위탁한 사실이 있다.

3. 관계기관 의견

부평구에서 공문을 통해 명시적으로 수탁기관인 부평구***에 계약 만료 안내 사항을 통지하였고 부평구***에서는 종전 청소년 수련관 위수탁 계약서에 의거 묵시적 갱신에 동의하였으며 위수탁 갱신 방침을 받고 그 방침 결정사항을 부평구***에 통지하였다는 사실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갱신 조항을 참고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의견에 대한 판단

그러나 조례 제13조(위탁운영 및 지원)제2항에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위수탁 갱신 방침을 받고 그 사항을 통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규정을 공유재산에 적용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향후 부평구청소년수련관과의 위·수탁 계약 갱신 시,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라며,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신고 체육시설업 보험가입 확인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보험 가입)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¹⁵⁾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 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 1항 각 호¹⁶⁾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손해 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5)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육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

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 만원으로 함.
-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 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함.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장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또한, 「체육시설법」 제30조(시정명령), 제32조(등록취소 등) 및 제40조(과태료)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행정처분)에 따라 3일의 영업정지¹⁷⁾를 명할 수 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평구 ❀❀❀에서는 손해보험 가입대상 체육시설업자가 체육 시설업을 신고하였을 경우 1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등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보험 보장항목 및 금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체육시설의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손해보험 갱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보험 가입대상 체육시설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장 항목·금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동안 부평구 손해보험 가입대상 체육시설 *개소의 손해 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평구에서는 ‘***’으로부터 보험증권을 제출 받지 아니하였고, ‘***’, ‘***’의 보험 보장 한도 금액은 1억원(1인)으로 관련 법에 따른 보상 한도인 1억5천만원(1인)에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17)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차:영업정지 3일 / 2차:영업정지 10일 / 3차:영업정지 20일 / 4차: 영업정지 1개월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 [시정] ①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장내역 미충족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체육시설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관광사업자 보험가입 확인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 따르면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르면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평구 * * *에서는 보험 가입대상 관광사업자 특히 여행업의 등

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 포함) 계속하여 이를 유지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의무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 갱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보험 가입대상 관광사업자 *개소의 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 등 *개소 관광사업자의 경우 보험증권을 기존 최종 만기일 이후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관계기관 의견

부평구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업종이 여행업계로 당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보증보험을 가입 유지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았음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의견에 대한 판단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 따르면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 포함) 계속하여 보험 가입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별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코로나 대유행이 보험 가입 및 유지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 [시정] ①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체육시설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운영 관리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12조(부평구 문화재단의 설립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조례」 제14조(대상사업)에 따르면 “재단의 사업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실행, 문화예술의 교육과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문화예술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 예술활동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 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사업,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문화재단 「정관」 제4조(대상사업)에 따르면 조례에서 규정한

대상사업 외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운영관리 및 진흥사업’,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하여 「조례」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부평구로부터 수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다.

3. 관계기관 의견

부평구에서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청소년 성문화 센터의 운영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출연기관에서 대행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여성가족부 지침(2023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20쪽) 등의 근거에 따라 부평구 유일한 출연기관인 부평구문화재단에 20**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사업범위를 넘어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을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넣는 것은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아 해당내용을 조례에 포함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 정관에 담아 운영한 것이고 행정분야별로 각각의 재단 법인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초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의견에 대한 판단

그러나 조례 제14조(대상사업)에 따르면 재단은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6조(정관)에서 재단의 정관에 제14조 각 호에 정한 사업과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대상사업을 벗어난 정관을 승인한 사항으로 부평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권고] 부평구문화재단이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대상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운영관리 및 진흥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사업을 해당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수탁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스마트 로봇주차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부당 관리 등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한다) 제43조18)에 따라 물품과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평구 □□□는 20**년 **월 **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동 **번지(☆☆동 쉼터놀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내에 ‘스마트 로봇주차 사업’(사업비 1,755백만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0**년 **월, **월 2차례 입찰공고하였으나 1개 업체 참여로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한 (주)□□□19)과 20**

18)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9) (주)□□□ : (주)□□□(**%), (주)□□□(**%), (주)⊗⊗⊗(**%)

년 **월 **일 계약금액 1,702,350천원에 20**년 **월 **일까지 준공하기로 계약하였다.

스마트 로봇주차 사업은 20**년 **월 **일 착공한 이후 20**년 **월 주차장 조성공사 지연으로 1차(*일) 사업정지, 20**년 **월 준공된 주차장내 주차로봇 시운전 중 주차로봇과 팔레트간 간섭 발생으로 2차(**일) 사업정지를, 20**년 **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능형 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심사 및 사용검사를 완료하기 위해 3차(별도 통보일까지) 사업정지가 되어 20**년 **월 사업이 계약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다.

1. 제안서 평가시 부적정한 실적평가로 부적격자와 계약

☐☐☐는 스마트 로봇주차 사업의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을 제안서 평가 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가 85점 이상인 자 중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기로 공고하였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이 2회 유찰되어 재공고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였으며 합산점수 85.75점으로 평가하여 85점 이상임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계약부서에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을 요청하였다. 계약부서는 ☐☐☐의 평가결과에 따라 (주)☐☐☐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입찰 공고시 제안서 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중 수행경험(실적) 평가를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실적인정분야는 물류 산업용 자율모듈 로봇 구축으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수행실적증명 등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에 (주)○○○은 정량적평가 수행실적으로 계약서 *건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였다.

기술개발사업 협약은 기술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협약당사자인 주관기관이 기술개발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갑과 을의 계약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납품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는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은 기술개발 협약실적을 제외한 계약건에 대하여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계약실적이 아닌 기술개발 협약실적을 제외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하면 (주)○○○의 평가 합산점수는 84.54점으로 공고시 정한 협상적격자 기준인 85점 미만으로 협상적격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은 기술개발사업 협약실적에 대하여도 평가에서 제외하지 않고 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한 결과 (주)○○○을 협상적격자로 평가하였다.

○○○은 계약 적격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적증명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나 소홀히 하였으며 계약부서는 계약담당으로 ○○○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토하여 정당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평가결과의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협상적격자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부적정한 사업기간 연장

지방계약법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의 일반조건에 용역의 일시정지는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 등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 용역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

또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잔여계약금액에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는 스마트 로봇주차 사업을 착공한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3차례의 용역 중지를 통보하였으며 1차, 2차 용역중지로 총**일동안 용역을 중지하였다.

1차 용역중지는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총**일로 스마트 로봇주차 사업의 시행 장소인 ☆☆동 **번지(☆☆동 쉼터놀이공원)의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의 지연으로 인하여 용역을 중지하였다.

☐☐☐는 스마트 로봇주차 사업의 시행을 위한 필수적인 전차 공정인 주차장 공사의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스마트 로봇주차사업의 시행시기를 검토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주차장 조성공사와 스마트 로봇주차 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하고자 같이 발주하였으며 그로 인해 주차장 조성공사의 설계 지연이 발생하자 주차로봇 사업도 같이 중지되었다.

이에 부평구는 계약조건에 따라 60일을 초과하는 **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중지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2차 용역중지는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총**일로 준공된 주차장내에서 로봇주차의 시험운영중 차창운송용 팔레트와 주차로봇간의

간섭이 발생하여 주행이 불가능하자 대표사인 (주)○○○에서 실정보고²⁰⁾를 통하여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팔레트를 재제작하기 위한 기간동안의 용역중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는 용역중지를 결정하였다.

스마트 로봇주차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기관이 별도의 시스템 규격과 설계를 제시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내에 준공을 하는 계약이다. (주)○○○은 제안서와 같이 입찰시 공고한 사업지인 공영주차장에 계약기간내 사업을 준공하여야 하며 준공기한내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는 팔레트의 설계와 제작에 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의 사유에 대하여 용역을 중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을 미준수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연배상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위한 실적평가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용역중지와 관련하여는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 (주)○○○ ***-**-20**-**-**호(20**.*.*.*), ***-**-20**-**-**호(20**.*.*.*),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전시체험공간 조성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부당 관리 등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한다) 제43조²¹⁾에 따라 물품과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사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취지와 다르게 일반분야의 공사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 확대되거나 소수 특정업체에만 유리하게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분야에서는 협상의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공사분야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폐지²²⁾되었다.

지방계약법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에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 관련

21)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개정, 2016.9.13.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평구 ○○○는 약 10년이 경과한 기후변화체험관²³⁾의 노후된 전시·체험 시설물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전시·공간 콘텐츠로 조성하는 사업을 계약목적물은 용역으로,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주)○○○과 20**년 **월 **일 370,000천원에 계약하여 20**년 **월 **일 준공하였다.

1. 시설비로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추진 부적정

○○○는 기후변화체험관의 전시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을 시설비²⁴⁾로 편성하였다.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세출예산 과목을 설정하여 편성·집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분류에 ‘시설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안전진단 경비 등에 대하여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을 학술용역이나 일반용역²⁵⁾으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없다.

○○○에서 수립한 전시체험공간 조성사업 계획은 탄소중립실감컨텐츠, VR체험관, 전시체험공간, 북카페의 4개 구성안으로 수립되었으며 공고시 입찰 참가자격으로

23)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24) 편성목 : ○○○, ***, 시설비및부대비(401), 시설비(01)

2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2. 용어정의

다. 용역분야

-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비디오물제작업·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실내건축공사업의 자격을 모두 요청하였다. 계획 및 공고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실내디자인설계는 용역부문에, 비디오물, 영상물은 물품부문에, 실내건축은 공사부문에 해당한다.

또한, 전시체험공간 조성사업의 착공과 준공내역서에 전시설치, 전시제작, 소프트웨어부분으로 구분되어 계약과 준공이 이루어졌으며 준공된 전시설치부분은 187,675천원으로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하며 전시제작부분은 67,133천원으로 물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에서 계획한 전시체험공간 조성사업은 용역, 물품, 공사가 모두 혼재된 계약이다.

○○○는 지방계약법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면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이 일반용역으로 발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공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전시체험공간 조성사업을 계약목적물은 일반용역으로,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하였다.

이로 인하여 ○○○는 용역으로 입찰하였음에도 제안서평가를 위한 실적평가는 물품으로 공고하고, 공고와 달리 실적평가는 물품과 용역을 모두 평가하고, 탄소중립실감컨텐츠를 추가제작하면서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과업변경²⁶⁾이 아닌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설계변경²⁷⁾을 하는 등 부적정하게 계약 및 집행관리를 하였다.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2. 낙찰차액으로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 관리 부적정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시설비(예산과목 401-01)는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는 전시체험공간 조성사업을 436,000천원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하였고 입찰결과 계약상대자와 370,000천원에 20**년 **월 **일 계약을 체결하여 낙찰차액이 66,000천원 발생하였다.

○○○는 예규에 따라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음에도 낙찰차액 66,000천원으로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입찰공고한 사업범위외에 추가로 영상컨텐츠 1식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20**년 **월 **일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변경이 아닌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설계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20**년 **월 **일 사업비 전액인 436,000천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변경한 설계내역은 전시일반영상S/W부분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없이 입찰참가자의 제안서와 제안 가격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는 계약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된 계약내용이외의 과업을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8항²⁸⁾에 따라 발주기관은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 과업지시 사항과 원가계산을 통하여 적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는 낙찰차액으로 영상컨텐츠 1식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인

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

라. “가”와 “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주)○○○으로부터 콘텐츠 구성과 시간상 차이가 발생하는 영상물의 시나리오와 가격을 제시받았다. ○○○는 과업내용과 가격에 대한 적절성을 심사하여 과업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심사없이 (주)○○○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와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계약하였다.

3. 과업의 변경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변경 부당

「지방계약법」 제6조 및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에 계약담당자 또는 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은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에 의하여 제안서의 일부를 조정하여 계약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계약된 제안서의 내용은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하여야 한다.

○○○는 전시체험공간 조성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여 (주)○○○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제안서로 20**년 **월 **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은 결정된 제안서를 기초한 내역서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 착공이후 20**년 **월 **일 준공시까지 계약의 변경은 *회만 하였으며 변경내용은 콘텐츠 추가제작에 관한 사항이다.

○○○가 협상에 의하여 제안서 내용중 조정된 사항은 VR체험실을 일반체험

실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이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는 계약시 확정된 제안서로 준공되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준공내역서와 현장의 준공물은 제안서를 조정한 VR체험실이외의 제안서 사항도 모두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어 준공되었다.

또한, 계약으로 확정된 제안서로 착공한 이후 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시공되는 과정에서 ○○○는 과업변경에 대하여 결재를 받지 않고 부당하게 변경하였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목적은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이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내용을 평가받은 제안서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평가받아 확정된 제안서와 달리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획한 목적인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목적이 소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도서 없이 발주하고 임의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는 시설비로 편성된 기후변화체험관 전시체험공간 조성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계약법령」 등 예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사업을 발주하고 관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부평구 ○○○는 계획검토 당시 실감콘텐츠 관련 입찰 공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대부분이 용역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였기에 참작하여 발주하였고 낙찰차액은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추가된 부분으로 당초 콘텐츠와 차이가 있고 설계변경과정을 거쳐 정당하며 진행과정에서 정리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당초 목적했던 목적물

에 부합하는 준공이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감형콘텐츠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을 것이나 ○○○는 실감형콘텐츠 제작이외에 전시체험물, 북카페 조성 등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사업내용을 시설비로 편성되었음에도 용역으로 주장하며 발주하였다.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으며 설계변경과정을 거쳐서 정당하다고 하나 설계변경 내용에는 추가로 제작하는 콘텐츠의 과업내용이나 가격에 대하여 적절성을 심사한 사항은 없이 단지 (주)○○○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와 가격만이 기재되어 있다.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목적에 부합하는 준공이라는 주장은 계약법령에서 정한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준공한 행위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결과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령을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한 목적과 수단으로 계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 요구

제 목 기후변화체험관 외벽리모델링 관급자재 부당 계약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훈계대상자 ▶▶▶ 지방** d(전 DDD)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한다) 제15조에 따라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에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할 사항으로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계약을 하는 사례, 특히 수의 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²⁹⁾하고 있다.

29)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

수의계약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하고 사업부서에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를 금지³⁰⁾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는 기후변화체험관의 외벽 알루미늄 시트패널을 철거후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제로에너지건물로 조성하고자 리모델링계획을 수립하여 20**년 **월 **일 계약하여 20**년 **월 **일 준공하였다.

○○○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공사를 20**년 **월 **일 계획을 수립하였고 20**년 **월 **일에 관급자재를 (주)○○○의 조달물품으로 93,280천원을 발주하고 20**년 **월 **일에 전기공사를 (주)○○○에 납품업체에서 같이 시공하기로 정하여 소액수의계약 17,423천원을 발주하였다.

1. 부정하게 작성한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특정물품을 부당하게 구매

○○○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공사를 발주하기 위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거나 직접 설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제조업체인 (주)○○○³¹⁾에 설계도서 작

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30) 제1장 입찰 및 계약직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성을 요청하였으며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계획³²⁾을 수립하였다.

(주)***에서 ***에 제공한 설계내역은 공사금액 113,309천원이며 도급공사 19,354천원, 관급자재는 93,784천원이고 그중 관급자재는 자사의 물품을 지정하여 93,874천원에 설계하였고 ***는 제공받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주)***의 특정물품을 구매하였다.

***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표준시방서에 의거 관급자재 구매를 요청하여야 하나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설계도서를 요청하여 부정하게 작성된 설계도서로 관급자재를 발주하였으며 설계도서에 특정물품을 지정하고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설계도서를 제공받은 납품업체의 특정물품을 설계도서에 지정하여 해당물품을 부당하게 구매하였다.

2.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위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위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물품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동일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중 5개사 이상을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가격제안 등 평가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격제안을 통하여 최대 10% 할인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수요기관은 2단계 경쟁을 회피 목적으로 1억원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1)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

32) 문서번호 : 부평구 ***-***(20**,**,**.)

☐☐☐는 기후변화체험관 외벽 리모델링 예산으로 150,000천원을 편성하였다. ☐☐☐는 예산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시공 하여야 한다.

☐☐☐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제조업체인 (주)☐☐☐에 설계도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주)☐☐☐는 20kw 벽체형 관급자재 93,784천원과 전기공사 19,350천원으로 예산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총113,309천원으로 설계하였고 ☐☐☐는 (주)☐☐☐의 20kw 벽체형 물품을 20**년 **월 **일 관급자재로 조달구매하여 20**년 **월 **일 납품받았다.

☐☐☐에서 구입한 관급자재 현황은 사업계획서에는 20.46kw, 설계내역서는 20kw, 조달구매는 20kw, 준공은 20.46kw이상으로 각각 다르며 태양광 판넬의 모듈 수도 설계 및 조달구매시는 **개, 준공은 **개로 설계내역과 준공물의 차이가 있다.

☐☐☐의 요청으로 설계도서를 제공한 (주)☐☐☐의 조달등록 물품은 20kw, 25kw 등 다양한 규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25kw이상은 물품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대상이고 준공물과 같이 **개의 태양광 판넬 모듈로 설치하고자 하면 20kw(**개) *개와 1kw(**개) *개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물품금액은 104,480천원으로 역시 1억원을 초과하여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대상이다.

☐☐☐는 사업계획 용량이 20.46kw임에도 (주)☐☐☐에서 제공한 설계도서에 20kw로 설계되어 (주)☐☐☐에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을 회피하도록 부당하게 설계하여 제공하였음에도 설계도서를 확인하지 않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물

품의 구매계약을 진행하여 부당하게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을 회피하여 물품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〇〇〇는 기후변화체험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업체에 설계를 요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설계도서에 특정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였다. 또한 설계도서를 대신하여 제공한 업체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구매를 회피하여 설계한 물품을 구매하여 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였기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부평구 〇〇〇는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25kw이상의 규격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다수공급계약 2단계 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목적으로 가격이 1억원 미만인 20kw 규격으로 구매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정업체로부터 설계도서를 제공받아 해당업체와 구매계약을 시행한 사실과 사업계획서의 계획용량과 설계내역 용량이 서로 상이하고 설계내역 모듈과 준공 설치된 모듈의 갯수가 각각 다른 사실로 〇〇〇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훈계] 지방계약법령과 제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와 부당한 방법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한 위 대상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삼산2배수 펌프장 관급자재 구매절차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에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계약을 하는 사례, 특히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³³⁾하고 있다.

수의계약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33)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명시하고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하고 사업부서에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를 금지³⁴⁾하고 있다.

2. 관계사실

인천광역시 부평구 **DD**는 20**년 **월 삼산2배수 펌프장의 노후된 펌프설비 교체공사를 시행하였다. 펌프설비 교체공사를 위해 관급자재로 입축축류펌프*대를 412,740천원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구매하여 교체하였다.

DD는 삼산2배수 펌프설비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에 표준시방서로 작성하여 구매를 요청하고 계약부서에서 제품을 선정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펌프제조업체인 **XXX**의 입축축류펌프를 설계도서에 지정하여 설계하였으며 **ZZ**에 해당물품의 계약을 요청하여 구매하였다.

DD는 계약 예규에 설계서·규격서·사양서 등에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특정물품을 지정하여 물품을 계약하였다.

34) 제1장 입찰 및 계약직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지방계약법령과 제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시 특정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계약법령 준수와 설계도서 작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예비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의하면,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및 인천광역시에서는 20**. **. **. MS사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른 PC교체 예산 확보 등 협조 요청 공문통보하였고, 공문에 의하면, MS 윈도우7 보안패치 등 기술지원 종료에 예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금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의 낙찰차액 활용, 일반예비비 활용, '**년 추경 및 '**년 예산 반영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신속한 PC교체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

2. 관계사실

부평구 ***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부평역사박물관과 구립 공공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에서는 20**.*.**.*. 부평역사박물관과 구립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윈도우 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대책 공공분야 업무용 PC 구입 등 예비비 사용계획(안)³⁵⁾을 수립하여 20**.*.**.*. ☆☆☆로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 공문³⁶⁾을 발송하였다.

☆☆☆에서는 PC를 부평역사박물관 *대, 구립 공공도서관 *대 등 총 *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 20**년도 일반예비비 사용 결정 통보³⁷⁾함에 따라 ***에서는 부평역사박물관 30,300천 원, 구립 공공도서관 44,000천 원 등 총 74,300천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35) ***-***호

36) ***-***호

37) ☆☆☆-***호

외의 지출, 즉 긴급성을 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비를 집행하여야 하므로 사업추진이 긴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년 **월 **일 부평구의회에서 의결한 제*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에서는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20**, **, **)에 따른 보안대책 공공분야 PC 구입비 74,300천 원을 일반예비비로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향후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여비 지급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

내 용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때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고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의하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시행규칙)에 의하면,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월 지급한도액)에 따르면,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평구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직원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1. 월액여비 지급대상자 지정 부적정

행정안전부에서는 20**.*.*.*.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 개정 알림” 공문³⁸⁾을 통보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자치단체별로 여비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여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나, 20**년 **월 감사일 현재까지 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

부평구 ●●●에서는 20**~20**년까지 “상시출장 업무의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계획(안)”을 수립하여 20**년도에는 *개 부서 *명, 20**년도에는 *개 부서 *명, 20**년도에는 *개 부서 *명, 20**년도에는 *개 부서 *명을 각 부서 및 동에서 신청한 인원 전원을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부평구에서는 20**.*.*.*. 20**년도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시 최근 7개월(1월~7월)동안 출장일수를 검토하고 지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상시출장 공무원 출장현황(*개부서 *명: *명, 공석 *명) 확인결과, 7개월동안 평균 15일 이상 출장공무원은 *명이고, 15일 미만인 출장공무원은 *명임은 물론, 심지어 *명은 출장사

38) ***-***호

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다. 부평구에서는 상시출장업무(월액여비 지급대상)에 대하여 부평구 여비 조례 제7조의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 없이 월액여비를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다.

2.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부평구 ☆☆☆에서는 20**. **. **. “식품안전정보수집 및 식품위생감시원 역량 강화를 위한 타 시·도 HACCP 우수인증업소 시찰 계획(☆☆☆-***호)”을 수립하여 20**. **. **. ~ **. **.까지 *개조 *명이 *일간 시찰을 실시하여 1,549,71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타 시·도 HACCP 우수인증업소 시찰을 위해서 차량(12인승 스타렉스) *대를 렌트하여 실시하였다.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인 2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에서는 일비의 2분의 1일 감액하지 않고 44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를 명시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고, 월액여비 지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20**년도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대상을 재검토 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착오 지급한 국내여비 220,0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에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비 업무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차목에 의하면,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1. 7. 27.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혁신의 기회요인은 증대되고 있고, 특히 지역단위 위기에 대한 상시 대응과 지역 주도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함에 따라 근거법령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2022.11. 9.자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조례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계사실

이에 반하여 부평구에서는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인 승강기 *대를 구매하여 설치하면서 인천지역업체 *개 업체에 대한 비교 견적없이 인천지역업체 이외의 타 지역업체인 *개 업체(서울 *, 경기 *)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에서는 코로나19 등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및 지역경쟁력 강화로 인천시 소재 지역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권고] 코로나19 등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및 지역경쟁력 강화로 인천시 소재 지역중소기업의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기금 운용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외 6개 부서

내 용

부평구 기금운용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개의 기금을 **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지방기금법」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필요한 경우 분임 기금운용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20조에 의하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세입의 징수는 「지방회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하되, 특히 기금의 수입

처리 등 관리업무는 「지방기금법」 제6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해 기금운용관이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징수의 방법은 징수관(기금운용관)이 「지방회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세입의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 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부기간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³⁹⁾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부 고지한 수입금을 수납한 수입금출납원(기금출납원) 또는 금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기금운용관)에게 수납 보고를 하여야 한다.

기금을 운용하는 각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특히 수입금의 등록(부과), 징수결의, 납부고지, 수납확인 등 기금 수입처리 전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방회계법」, 「지방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절차와 형식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기금운용 담당부서에서는 기금의 수입이 발생하면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에 수입금내역(부과), 고지서 정보, 징수결의 사항을 등록하고, 징수결의서에 기금운용관(분임 기금운용관)의 날인을 득한 후 고지서를 첨부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고 납입이 완료되면, 수납 처리하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금 수입금 처리절차 미준수

☆☆☆ 등 *개 부서에서는 연도내 발생한 수입금 부과 등록 누락 *건, 징수

39)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제2항 ‘2호 납입고지서, 3호 납부서, 4호 납입서’ 등의 고지서 발
부

결의등록 누락 *건을 납부의무자가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 지체하여 e-호조에 임의로 등록하였고, 납부고지 문서시행 누락 *건, 수납등록 지체 *건 및 수납등록 *건 등 총 *건에 대하여 등록처리를 누락하는 등 업무를 해태하였으나,

기금 수입금에 대하여 임의로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에 입력함으로써 회계연도별 결산보고시 실제 수입액과 징수부 상 수입액이 부합하는 것처럼 하였다.

또한, 수입금의 징수결의는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이 부과한 금액에 대하여 징수결의서에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확정하여야 하나 통합재정관리기금 등을 운용하는 *개 부서에서는 총 *건의 수입금에 대한 징수결의 날인을 누락하는 등 20**년부터 20**년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개 기금 운용부서에서는 '수입금 부과 등록 누락, 징수결의 등록지체 및 누락, 수납등록 누락, 징수결의 날인 누락 등 총 *건 기금 운용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사항

부평구에서는 2014년 5월 12일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을 개정하여 자금 융통 기능과 기금별 개정 여건에 따른 자금 융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부평구에서는 202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고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여야 함에도 20**년 **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채상환기금 관련 조례가 존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존치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회계법」 등 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입·지출금 처리, 결산 등의 기금운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부적절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은 2020. 6. 9. 개정 시행(공포)된 사항으로 부칙(법률 제17390호, 2020. 6. 9.) 단서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2020. 9. 10.부터는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2. 관계사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서는 20**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20**. **. **. 의결)부터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는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했다.

그러나, 부평구 ☆☆☆(**팀), ⊕⊕⊕, △△△에서는 20**년도 제*회 추가경정예

산(20**.*.*.*. 의결) 및 20**년도 본예산(20**.*.*.*. 의결) 편성시 지하수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를 해당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계상함으로써 예비비를 부적정하게 편성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기타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하는 경우 각 회계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ㅇㅇㅇ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두며, 예산편성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예산참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조례 제33조(예산학교 운영)⁴⁰⁾에 의거 위원회 구성 요건에 따라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자는 예산학교 운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평구는 참여예산 교육과정을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매년마다 실시하였으며, 예산학교에서는 참여예산학교 기본교육 과정, 심화교육 과정 등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평구 ㅇㅇㅇ에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자 *명 중,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

40) 2021. 11. 1. 개정 前 조례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의·조정하는 중요 기구임을 감안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사 및 물품 하자만료검사 미 실시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외 7개 부서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제13장 제10절 “3”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이하 “정기하자검사”라 한다)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이하 “하자만료

검사”라 한다)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관계사실

따라서 계약담당자 또는 하자검사를 위임받은 검사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이 정해진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따로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평구에서는 ❀❀❀의 ***공사 등 *건의 공사에 대해 하자만료검사를 미실시하였으며, ❀❀❀의 ***공사(전기) 관급자재 등 *건의 물품에 대해 하자만료검사를 미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향후 하자검사 업무에 대하여 하자만료검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공예금 계좌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ㅇㅇㅇ 외 4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각 부서와 동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대금 결제, 세입금 중간수납 및 그 외의 사유(보조금 반납, 민원수수료 등)를 위한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평구 ㅇㅇㅇ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및 훈령 제61조에 따라 보관금(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포함) 및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경비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1. 보통예금계좌 관리 소홀

훈령 제3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공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되,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훈령 [별표 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2. 계좌 운영·관리 (이하 “계좌 운영·관리”라 한다) 2-1. (계좌운영)에 따라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계좌 운영·관리 2-2(운영점검)에 따라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부서장, 관서별 지출원, 회계부서장은 주기적(연 1회 이상)으로 계좌 거래 내역, 잔액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지 않은 계좌는 해지하거나 통·폐합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회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20**.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 등 *개부서에서는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과오납금 등에 대한 반환 등을 소홀히 하여 세입조치 및 반환 등이 필요한 보통예금계좌 잔액 총 *건 5,990,560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20**. **. **. 시행된 훈령 [별표 3] 2-4(외부점검)에 따라 회계책임관은 감사부서에 요청하여 연 1회 이상 계좌 운영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장은 사업부서, 금고 등에서 계좌현황 등을 제출받아 대조·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㉞㉞㉞에서는 감사기간 현재 훈령의 시행일이 1년이 도래되어가고 있음에도 감사부서에 요청하여 연 1회 이상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지 않고 있다.

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 하여야 하며,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훈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⁴¹⁾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훈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세입세출외현금(이자 포함)이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관련 내용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㉞㉞㉞에서는 20**. **. ○○○ 준공과 관련하여 ◇◇◇와 인수·인계 협약

4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을 하며, 도로 및 부속시설물과 관련된 별도 의견에 따라 □□□□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보수예치금 4억 원을 납부 받았으며, 보도육교 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 336,996천 원을 ㄷㄷㄷ에 요청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중이다.

그러나, ⊕⊕⊕에서는 20**. **. **.자로 공공시설물 보수예치금의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 **. **.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ㄷㄷㄷ에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기간 연장을 위한 공문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5년 동안 납부자에게 반환조치 또는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336,996천 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장기 보관하고 있다.

△△△에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⁴²⁾」(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에 따라 ☆☆동 **-**의 공유토지를 20**. **월 당시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였으며, 20**. **월부터 20**. **월까지 공유자들로부터 청산금 903,798천 원 중 616,559천 원을 납부받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중이다.

공유토지분할법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청산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받을 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청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서는 20**.년도에 부과된 청산금 총 903,798천 원 중 287,239천 원이 감사기간 현재까지 미납되어 체납 소유주의 토지를 압류조치를 하는 등 미납액의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소유주 *명이 청산금 616,559천

42)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 5월부터 2020. 5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유효기간이 만료됨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수납된 청산금 616,559천 원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장기 보관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① ㉞㉞㉞에서는 연 1회 이상 보통예금계좌 운영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② ▲▲▲와 ○○○에서는 보통예금계좌의 원인미상 잔액 5,990,560원(▲▲▲ 1,135,375원, ○○○ 4,855,185원)을 반환 또는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장기보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보수예치금 336,996,262원에 대한 집행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미이행시에는 이를 반환 또는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④ △△△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중인 도시계획청산금 616,558,890원을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환조치하시거나 법원에 공탁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외 43개 부서

내 용

부평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각 부서와 동에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별표 2] 4. 업무추진비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1. 비정상적 시간대(23시~다음 날 6시)의 업무추진비 사용 등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을 제출한 경우 외에는 비정상적 시간대인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 등 *개 부서 및 동에서는 비정상적 시간대에 업무추진비 총 *건 1,269천 원을 사용하였다.

가.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500원 공공독서실 근무자 격려 간담회’는 근무 종료자 및 신규 채용자 격려를 위한 간담회로 당사자 중 근무시간 종료 후 참석자가 있어 간담회 시간이 늦어졌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오후 근무조 근무시간 15시~22시)

나. 의견에 대한 판단

업무추진비는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되었다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제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이 불가피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출장복명서 등 객관적 직무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속 직원 격려 목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해설집」(이하 “해설집”이라 한다) Ⅱ.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조문별 해설에 따르면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해야 하며, Ⅲ.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직무활동[별표 1] 해설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에 따르면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내부 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규칙 [별표2] 제6호에 규정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설집 Ⅲ.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직무활동[별표 1] 해설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따라 외주업체 직원, 공공근로 및 대체근로자 등은 상근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격려금품의 지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 등 *개 부서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직원격려 목적 간담회 비용, 격려물품 구입 비용 등 총 *건 1,355천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소속 상근직원에 해당되지 않는 희망일자리 근로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공공근로 참여자 등에게 직원 격려 목적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가. 관계기관 의견

㉞㉞㉞에서는 ‘희망일자리 인력 노고 격려를 위한 간담회 개최 비용 지출’이 [별표1] 제6호의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아니라, 제4호 가목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및 제5호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근거하여 집행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의견에 대한 판단

희망일자리 인력은 소속 비상근 직원으로 제4호 가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격려가 필요한 사업추진 관계자, 제5호의 가, 나, 다목에 해당되는 근무자의 경우가 아니며, ‘희망일자리 인력 노고 격려를 위한 간담회’는 단순 내부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이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에 따라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 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 등 *개 부서 및 동에서는 20**. **월부터 감사대상기간 현재까지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

특히, ○○동 등 *개 동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직원 사기진작 간식비, 종무식 대체 간식비 등 총 *건 1,582천 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

4.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사용 시 상대방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미 기재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에 따라 건당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 등 *개 부서 및 동에서는 건당 50만 원 이상의 간담회 개최,

기념품 구입 등 총 *건 13,319천 원에 대해 주된 참석자, 수령자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 □□□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1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지만,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의 각 호⁴³⁾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아울러, 2022. 4. 20.자로 개정된 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유

4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재산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㉞㉞㉞ 등 *개 부서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 법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평구 □□□□ 등 *개 기관에 대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였다.

㉞㉞㉞, ㉞㉞㉞, ○○○에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기관으로부터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아야 함에도 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였다.

특히, ㉞㉞㉞에서는 부평구 □□□의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이 20**. **. **. **일자로 만료되었음에도 20**. **. **. **에 신청서를 접수받았고, 20**. **. **. **부터 20**. **. **. **까지 기간을 소급하여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였다.

○○○에서는 20**. **. **. **까지 부평구 ㉞㉞㉞44)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였던 위탁기관이 20**. **. **. **자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사용허가 변경 등의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새로 위탁된 기관이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에서는 20**. **. **. **자로 ㉞㉞㉞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만

44) (부평구 ㉞㉞㉞)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 20**. **. **. **부터 20**. **. **. **까지 센터 시설에 대한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받아 사용 중이었으나, 20**. **. **. **자로 (재)인천광역시 \$\$\$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됨

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항을 재검토하였고, 20**. **. **.부터 유상으로 사용을 허가하였다.

또한, ○○○에서는 20**. **. **. △△△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며, 2022. 4. 20.자로 개정된 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하여야 함에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무상사용 허가의 근거가 아닌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⁴⁵⁾를 근거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5)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여부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을 따른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 절차 이행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물품관리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주관 실장·담당관·관·과장·지소장이 물품 매입을 요구할 때에는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제1항에 심사해 따르지 않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에서는 20**.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정수관리대상 물품 소요경비 예산을 편성하며,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 심사를 소홀히 하여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총 *개 물품의 구입 경비 15,093천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에 있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수책정 승인 이후 예산편성하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 추진 시에는 정수관리대상물품의 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수책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등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ㅇㅇㅇ, ㅇㅇㅇ, * * *

내 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ㅇㅇㅇ, ㅇㅇㅇ, * * *는 20**년부터 20**년까지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였다.

1. 보조사업자의 청렴사용서약서 미제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 ㅇㅇㅇ에서는 ‘○○○ 지원’ 등 *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2. 보조금 관리통장 제출 시 확인 미흡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나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 전용통장은 자부담이 없을 시 기존 통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통장의 잔고가 0원으로 되어있는지, 자부담이 있을 시에는 자부담금이 예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부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 ○○○ 등 *개 부서에서는 ‘○○○ 지원’ 등 *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을 제출받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3. 보조금 관리카드 미작성

「지방보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하며,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보조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① 보조금 사업담당자는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교부신청에 필요한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조사업 추진시 보조금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시어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 ※※※

내 용

1. 보조사업자의 지출결의서 작성 미흡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지출 전에 건별로 내부품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조사업들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들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20**년 ‘(사)***’는 지출결의서는 작성하였지만 전체 보조금 30백만원에 대하여 사후에 일괄 내부품의를 득하였다.

2. 보조사업자의 지출 증빙자료 미비

「지방회계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에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산보고서 서식은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추진하였는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부평구 ◯◯◯에서는 ‘부평구 ○○○’와 ‘△△△’에서 제출한 지출 증빙자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출집행 서류에 수량 및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진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보조사업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미실시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1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등의 수당 지급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34조 및 「지방세법」 제86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 ◯◯◯의 “▽▽▽” 에 대한 보조사업자 ‘□□□’와 ‘★★★’는 인건비 지급 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공제만 한 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 사업’에서 미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회계법, 소득세법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보조금 예산과목 편성 및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ㅇㅇㅇ

내 용

1. 예산과목 부적정 편성

「지방보조금법」 제6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가. 민간위탁사업비 예산과목 부적정 편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2조에서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정하고 있다.

부평구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관 혼합운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위탁금이 아닌 보조금을 매년 센터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부평구 ㅇㅇㅇ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강당무대 장애인 경사로 설치 사업과 바닥공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로 편성하여야 했지만, 민간위탁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음에도 민간위탁사업비로 세워 시행하도록 하였다.

나.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과목 부적정 편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에 따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부평구 ㅇㅇㅇ는 매년 자원봉사센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인 프로그램운영사업비에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위한 경비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다음 연도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으로 따로 편성하여 운영하지 않아 매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에서 민간행사성 경비가 집행되고 있다.

2.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가. 보조사업 추진으로 부적합한 사업 보조금 편성

「지방보조금법」 제2조는 지방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명시하고 있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동 주민자치회의 ‘%% 사업’은 당초 제출한 사업제안서에서 이미 재료비로 공원 조경공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재료비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ㅇㅇㅇ에서는 이를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에서 ‘%% 사업 재료비 지출’ 명목으로 토공정리 및 디딤석, 수목이식 등의 조경공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 사업’은 공원 조성 사업이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원 조경공사가 「지방보조금법」 제2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으로도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부평구 해당 부서에서 직접 계약 등을 통하여 추진하였어야 하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보조사업자의 계약절차 미이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보수보증금률과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공중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내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 ㅇㅇㅇ는 20**년 보조금 교부⁴⁶⁾ 시 첨부한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할 것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사업 시행 중에 지방계약법을 준용할 것이 명시된 문서를 시행⁴⁷⁾하였고, 보조사업자 ㅇㅇ동 주민자치회에서는 ‘%% 사업’을 완료 후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보수보증금⁴⁸⁾을 납부받아야 하나 납부받지 않았다.

46) ㅇㅇㅇ-***(20**,**,**) : 20**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조건(「20**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통보

47) ㅇㅇㅇ-***(20**,**,**) : 「20**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통보

48)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구 분	조경공사	근 거	비 고
하자보수보증금률	100분의 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전체 목적물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 2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3.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운영비 항목 지출

「지방보조금법」 제13조,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를 교부받아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연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인 프로그램사업비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성 경비인 ‘&&&&’을 *차례에 걸쳐 집행하였으며, 20**년에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비를 프로그램사업비에서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혹은 하자보수보증서)을 납부하도록 하고 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보조금 예산을 편성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예산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자체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부조건을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기재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실적보고서 미제출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는 ◁◁◁과 ▷▷▷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추진하였는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

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는 보조사업자 ◁◁◁와 ▷▷▷에서 분기별로 집행증빙내역만을 제출하고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및 집행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정산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적보고서 심사결과에 따라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담당직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

내 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하 “○○○”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 용역 및 물품의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간(20**년~20**년) 동안 총 *건(용역 *건)의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다.

1. 평가항목 배점 조정사유 입찰공고 명시 소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따라 제안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입찰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신인도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정성적 평가분야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자료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발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4.’ 제안서의 평가에 따르면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고,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표1]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제시할 시,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1.다-8’⁴⁹⁾에 따라 그 조정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점을 조정할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 10~30점, 정성적 평가분야 50~7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는 10~30점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배점 조정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총 *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분야별 배점한도(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를 가감 조정한 *건 사업에 대하여 그 조정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2. 제안서 평가위원 인원 수 미충족 및 관련 규정 개정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

49)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입찰공고

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8)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구 ○○○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년 **월과 20**년 **월) 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건에 있어서 평가위원 수가 7인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예비 평가위원 추가 연락 또는 위원회 일정 변경 등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였고, 유효하지 않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다.

20**년 **월에 추진한 □□동 ▣▣사업의 경우, 20**년 **월 **일에 제안서 평가위원을 추천하여 평가위원 7명과 예비위원 2명을 선정하였으나 20**년 **월 ** 평가위원 개별통화 결과 7명 중 3명의 불참 통보로 예비위원 2명을 평가위원으로 대체하고, 순번에 따른 예비위원 1명을 더 추가하여 총 7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였다. 이후 20**년 **월 **일 평가위원 1명이 위원회 불참을 통보하였으나, 아무런 검토없이 20**년 **월 **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6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하였고, 제안서를 제출한 두 업체 중 한 업체를 총점 *점(정성적평가 *점) 차이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0**년 **월에 추진한 ▣▣동 ▣▣사업의 경우, 20**년 **월 **일에 제안서 평가위원을 추천하여 평가위원 7명과 예비위원 2명을 선정하였으나, 20**년 **월 **일 평가위원 개별통화 결과 7명 중 2명의 불참 통보로 예비위원 2명을 평가위원으로 대체하여 총 7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였다. 이후 20**년 **월 **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평가위원 중 1명이 불참하였으나 그대로 6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제안서를 제출한 네 업체 중 한 업체를 총점 *점(정성적평가 *점) 차이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20**.*.*.*.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주의사항 통보”⁵⁰⁾ 문서를 발송하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내부규정 등으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선정된 위원 중 2/3 이상 위원만 출석한 경우 위원수에 관계없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평가위원이 7인 미만인 경우에도 제안서를 평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달리 평가위원 최소인원수 미만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과, 내부규정으로 평가위원 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인천광역시에서도 20**.*.*.*. 같은 사항을 관할 군·구로 발송⁵¹⁾하여 주의토록 하였다.

그러나 금번 감사기간 동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확인한 결과,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규칙(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등 제안서평가위원회 적정 운영을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50) 행정안전부 ###-***(20**.*.*.*.)

51) 인천광역시 @@@-***(20**.*.*.*.)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등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 최소 인원수가 확보된 상태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에 부쳐야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유형별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하⁵²⁾인 경우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평구 ⊕⊕⊕는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사범위기간(20**년 ~ 20**년)동안 20**년 동절기 민원해소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등 총

52)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건(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용역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준용하였다.

부평구 ☐☐☐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관련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사범위기간(20**년 ~ 20**년)동안 20**년도 학교 주차장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 등 총 *건(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용역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준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가격을 거래 실레가격, 감정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경제성,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는 감사범위기간 총 *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 중 *건을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를 단독으로 지명한 후 객관적인 비교·검토 과정 없이 사업발주부서의 설계기초금액 대비 90% 범위 내에서 지명한 계약상대자와 구두 협의하여 최종금액을 결정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부평구 ☐☐☐ 또한 감사범위기간 총 *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 중 *건을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를 단독으로 지명한 후 객관적인

비교·검토 과정 없이 사업발주부서의 설계기초금액 대비 90% 범위 내에서 지명한 계약상대자와 구두 협의하여 최종금액을 결정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은 일반입찰을 기준으로 하되 수의계약은 일반입찰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에 있어서 계약담당부서의 재량이 많은 만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 실례 가격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한 후 경제적인 금액, 품질 등을 고려해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부평구 ⊕⊕⊕ 및 ▣▣▣는 이를 미준수하여 경제성과 투명성이 저해된 계약체결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가능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전직원 대상 계약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있어서 규정에 적합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단일사업 분리발주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부평구 □□□는 ○○○사업(△△) 대상지 내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의 일환으로 20**년 **월 **일 ◆◆축제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사업 계속비이월액 58,694천원, 사업내용은 □□□ 개최(20,000천원), □□□ 프로그램 진행(34,800천원), 주민홍보를 위한 포스터 등 제작(3,984천원)이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의5에 따르면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분할·분리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2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는 ◆◆축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인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용역도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행사 운영(○○○ 개최 및 ○○○ 프로그램 진행) 용역사 선정은 여성기업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으로, 포스터 등 제작의 주민홍보사업은 추정가격 2천만 이하의 소액 1인 견적 제출 수의 계약으로 분리하여 발주하기로 결정⁵³⁾하고 2건의 수의계약을 동일시기(20**년도 **월 **일)에 각각 체결하였다.

부평구 ○○○에서 동일시기(20**년도 **월 **일)에 체결한 *건의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내용은 ◆◆축제 행사 추진과 행사 홍보 인쇄물 제작으로, 용역 과업에 행사 온·오프라인 홍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민홍보를 위한 인쇄물 제작은 용역 과업에 포함하여 1건으로 통합 발주해야 할 단일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평구 ○○○는 20**년 ◆◆축제 행사 추진시 사업비 편성 및 사업 목적에 비추어 보아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단일사업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2인 이상 수의견적 제출 방법으로 용역사를 선정함이 마땅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경쟁 입찰을 회피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건으로 분리한 후 동일한 시기에 각각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하여 부평구 ○○○가 20**년 ◆◆축제 운영 용역과 20**년 ◆◆축제 관련 홍보물 제작을 단일사업으로 통합 발주하였다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

53) ○○○-*** (20**.**.**.) 부평구 ○○○사업(△△) 20**년 ◆◆축제 추진계획(안)

여 수의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다수의 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으며,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1인 견적에 따른 낙찰율보다 낮은 금액(차액 비교 : 4,153천원)으로 계약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 경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부평구 ○○○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어긋나게 단일사업을 *건으로 분리 발주하여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걱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3. 관계기관 의견

부평구 ○○○는 ♦♦축제 운영 용역은 행사 준비와 운영을 위한 용역이고, 행사 홍보물 제작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자체 디자인하여 그 시안으로 포스터, 초대장, 현수막 제작 등 인쇄물 제작 구입 건으로 성격 자체가 다르며 예산 집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행사 운영 용역 착수일(20**.**.**.)로부터 행사 개최일(20**.**.**.)까지 준비기간 동안 주민참여회의 및 사전 홍보 등을 추진하기에 일정상 무리가 있었고, 행사의 효율적인 준비를 위해서 자체 디자인과 홍보물의 제작은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 디자인 제작으로 디자인 비용을 절감하였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의견에 대한 판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자체 행사 디자인 제작 시안을 행사 운영 용역사와 협의하여 인쇄물로 제작 후 홍보 지원하는 내용까지 과업에 추가하면 단일사업으로 통합 발주가 가능하므로 위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향후 계약관련 법령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단일사업이거나 유사한 사업일 경우 부당하게 분리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 공사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부평구 □□□(이하 “□□□”라 한다)에서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의 일부를 예산재배정 받아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 부평구 ○○동 ▽▽시장 일원 시설공사’(이하 “골목길 재생 시설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가 현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32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같은 지침 제148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서류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골목길 재생 시설공사 설계서를 검토한 결과 주요공종 중 포장공종은 아스콘 표면에 스텐실 도막 포장(A=2,195m²) 및 과속방지턱 *개소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 설계도면과 현장을 교차 검증한 결과 설계도면상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에는 이미 과속방지턱(*개소)이 기 설치되어 있어 설계서와 현장 간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사감독관은 착공 시 설계서 등 계약서류를 숙지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과 현장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시행 등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설계오류사항 5,045,700원에 대하여 감액 설계변경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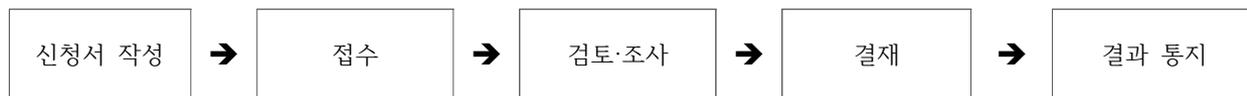
부평구 ▶▶▶(이하 ‘▶▶▶’라고 한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내 *개의 도시공원과 *개의 녹지를 조성·관리하고 있다.

1. 공원녹지 점용(변경)허가 처리 소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공원녹지 관리청의 장에게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4조(허가신청서 등)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공원녹지 점용허가의 처리절차는 [그림1]과 같으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는 점용허가 신청의 처리기간을 15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1] 공원녹지 점용허가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 자료출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재구성

그리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2조(점용 또는 사용허가 기간)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관리청의 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청의 장은 점용 또는 사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는 최근 *년 간(20**년~20**년) *건의 공원녹지에 대한 점용(변경) 허가를 처리하면서 *건을 사후 점용허가 하였고 *건을 점용허가 만료일이 지난 후 점용(변경)허가 등 공원·녹지 점용(변경)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2. 등록면허세 처리 소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별표1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를 받거나 변경을 받는 자는 종별 구분(제1종~제5종)에 따라 「지방세법」 제34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장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공원점용허가의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표3]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표3] 도시공원 점용허가 면허 등록면허세 종별 구분

구분	종류	1종	2종	3종	4종	5종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공원녹지법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 제외)	면적 1,500㎡ 이상	1,000~1,500	500~1,000	50~500	-

※ 자료출처 :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재구성

이에 따라 부평구는 「지방세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등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납부를 확인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거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사실을 부평구 ◇◇◇(이하 ‘◇◇◇’라고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최근 *년 간(20**년도~20**년도) 공원·녹지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건에 대한 면허 부여 사실을 ◇◇◇에 통보하지 않다가 “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제출 협조 요청”⁵⁴⁾에 따라 “20**년~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제출” 등⁵⁵⁾ 3차례에 걸쳐 ◇◇◇에 지연 통보하였고,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처리하는 등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54) ◇◇◇-*** (20**, **, **)

55) ***-*** (20**, **, **), ***-*** (20**, **, **), ***-*** (20**, **, **)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도시계획시설(도로) 행정절차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훈계대상자 □□□ 지방** e
⊕⊕⊕ 지방** f

내 용

부평구⁵⁶⁾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도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 후 이를 고시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미이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의 준용) 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제2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56) (⊕⊕⊕)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 신청, (□□□) 중도위 협의,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따라 사업인정을 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및 제49조(설치)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부평구에서는 20**년 **월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 중 ‘▲▲▲공사’ 외 *개 사업에 대하여 중토위 협의 없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5항에 따르면 중토위는 협의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평구 ⊕⊕⊕에서는 「국토계획법」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따라 20**년 **월 **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년 **월 **일 이내에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 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어 중토위에 다수의 협의요청 건수가 발생함에 따라 협의 완료에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7항에 따르면 중토위가 60일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 전에 중토위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완료될 수 없다.

그러나 부평구 ⊕⊕⊕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했어야 함에도 뒤늦게 신청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담당부서인 부평구 회회회에서 중토위와 협의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여야 함에도 협의 없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2. 사업지연 및 감정평가 재평가에 따른 예산 낭비

중토위 협의 없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한 *개 사업 중 ‘▲▲▲공사’, ‘▼▼▼공사’와 ‘◇◇◇공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폐지 후 중토위와 협의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재고시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공사’와 ‘◇◇◇공사’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지장물 등의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후 토지 등의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를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하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라고 한다)의 재결을 완료하고 보상금 공탁,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 전 중토위와의 협의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지토위에 재결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재평가 등)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협의되지 않은 동일한 물건을 재평가함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인 2,756,600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결과적으로 중토위 협의 미이행으로 협의를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폐지 → 중토위 협의 → 실시계획인가 재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재차 이행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행정절차 누락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동일한 토지 등에 대한 재평가 감정평가수수료 2,765,600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훈계] 위 대상자 e, f을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따른 중토위 협의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여부, 토지 등의 수용 재결 신청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동일한 물건의 재감정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설공사(토목) 품질관리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로 ‘○○○공사’ 외 *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⁵⁷⁾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제2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57) 품질관리계획 대상: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제4항에 따르면 별표 5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 기준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 규정하고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배치, 시험실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감사일 현재 진행중인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중 ‘○○○공사’ 외 *개 사업의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착공 전 품질시험계획서 미제출과 품질관리기술인 미배치로 인하여 시험실 운영을 소홀히 함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시험)계획 검토 및 승인, 건설기술인 배치, 시험실 운영 등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담당자 직무교육과 해당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공측량 절차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4조(측량의 항목 및 기준)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도로 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행하여야 할 측량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제2항에는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미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에게 제출’하고, 제18조(공공측량 성과의 심사)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

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에서는 20**년 **월 이후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 중 ‘●●●공사 외 *개’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의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① 향후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 「건설기술 진흥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공공측량성과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담당자 직무교육과 해당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검수 및 판매소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㉔㉔㉔

내 용

인천광역시 부평구(㉔㉔㉔)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예규)」 Ⅲ.세부시행지침, 1.종량제 봉투에 관한 사항, 다.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 및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금지, 종량제

봉투의 검수, 품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납품된 종량제봉투의 검수에는 검수 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를 하여야 하고, 시험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직접 통보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지침의 라.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판매소와 불법 제작 업체 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도매점을 통해 소매점 봉투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제출받아 판매량이 30%이상 급감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준수사항)에 따라 지정판매소는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할 때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규격별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등의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는 20**.* **월 부터 20**.* **월 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총 *회에 걸쳐 제작·구매하면서 관련 지침에 따라 검체를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 시험분

석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작업체가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분석의뢰(*회)한 사실이 있다.

또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판매량이 30%이상 급감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관계기관 의견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는 20**년도 **월에 일제 판매소점검을 실시하여 20**년 **월까지 폐업된 업소를 직권조치하였으며, 20**년도에는 점검을 미실시하였고 전화나 수시로 건의 들어온 판매소만 점검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검수 시에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검수공무원이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하시기 바라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폐기물처리신고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㉟㉟㉟

내 용

인천광역시 부평구(㉟㉟㉟)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신고와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에 따르면,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조제6호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등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에 따라 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장⁵⁸⁾, 건설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처리업 및 중간처리업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58)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사무 중 폐기물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의 관리, 폐기물처리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함

같은 규정 제5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에 따르면 점검기관은 지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9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지도·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우수·일반·중점관리 등급에 따라 실시하며 폐기물처리 신고사업장의 경우 년 2~4회 정기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계사실

부평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된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지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관할 사업장을 등급별로 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등급에 따라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관할 사업장 중 20**년에 *개소, 20**년과 20**년에 각 *개소만 점검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20**. **.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환경분야 사업장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계획 미수립 및 관리 소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의 내용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 포함)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에 따라 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설치신고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토양오염검사의 실시 및 적정 여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0조(점검계획의 수립)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2월말 까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관할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1조(점검의 종류)에 따르면,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고, 구청장은 [표1]과 같이 해당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등급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1] 사업장 분류 및 등급별 점검횟수

등 급	사업장 분류	점검횟수(회/년)	비 고
우 수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1/2	
일 반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1/1	
중 점	토양오염검사 부적합 사업장 및 시설, 토양오염사고 사업장 및 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	상·하반기 각 1/1	

또한 같은 지침 제16조(점검실적의 제출)에 따라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 매년 전년도 12월 말 현재 관할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을 익년도 1월 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신고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관할 *개소의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매년 2월말 까지 수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부평구는 관할 관리대상시설의 지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등급별(우수, 일반, 중점)로 분류하였으나 등급에 상관없이 20**년도에 *개소의 점검대상 중 *개소를 연 1회 점검하고 *개소는 점검을 미 실시하였다.

그리고 20**년도와 20**년도에 점검실시한 각각 *개소 사업장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사업장 분류 및 등급별 점검횟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 1회 점검을 실시하여 분류별 관리대상시설 사업장 및 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에 따른 점검소홀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제3항에 따르면 가동개시 신고 또는 가동개시일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에 따르면 사업자는 폐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제1항에 따르면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50일. 다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로 하고,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광역시의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8조(지도·점검 방법) 제6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내지 제3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가동개시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10일 이내)에 가동개시 신고(가동시작 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와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단, 대기배출시설은 필요시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다)를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평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관리 하면서 가동개시(가동시작)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가동개시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함에도 기간 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는 인허가 업무와 무허가 민원발생,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으로 15일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웠고, 부서 전체 코로나 자가 격리, 업체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의 다양한 이유로 기한 내에 가동여부를 확인하기가 매번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의견은 부서 내 업무량 조정과 일정 조율 등을 통해 해결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가동개시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을 지연하게 된 적정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부평구는 가동개시(가동시작) 신고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 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상기의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가동개시일 이후 현장 확인하기까지 *일에서 최대 *일 까지 다수 지연된 상황임을 볼 때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① 「토양환경보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관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가동시작) 신고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이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에 따라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4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부평구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구청장에 신고(변경)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관리인에 대하여 신고(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계속해서 2년마다 4 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는 □□□ 등 *개소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법적 기한 내에 최초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20**. **.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도로점용허가대장 작성·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부평구 ⊕⊕⊕(이하 “⊕⊕⊕”라 한다)에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실·담당관·관·과의 분장사무)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 따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도로점용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에서는 최근 *년간 차량출입시설 등 도로점용 허가신청 관련하여 총 *건의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시 관련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점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후 차량출입시설 확장·축소·폐지, 지상시설물 이설 등에 대한 점용실태 파악 및 현황관리 등 도로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민원 접수부터 허가처리 및 착공계·준공계 접수 등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대장이 일괄적으로 관리되도록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차량출입시설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관련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없는 실태이다.

따라서 ⊕⊕⊕에서는 관내 도로점용실태에 대하여 자체조사 또는 용역발주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용역발주 등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도로점용 실태조사 및 도로점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000

내 용

부평구 000(이하 “000”라 한다)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20**, **)으로 기존 청사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원도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이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라 한다)를 추진하였다.

1.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감독업무 소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 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2019. 4. 11. 오전 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 상정하여 같은 날 정부는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현장작업 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는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2019. 4., 국토교통부)」 4. 설계시행 단계(시스템 비계)에 따르면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이하 “시스템 비계”라 한다)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설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호, 시행 2020. 1. 14.)」 중 「KDS 21 00 00 가시설물설계기준」에 따르면 ‘비계를 선정할 때에는 설치·해체 및 이동 중 작업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스템비계를 우선 검토하고, 비계 설계 시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OOO]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시 기존 농업기술 센터 건물 해체를 위한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 공종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이 누락된 채로 물량내역서만 작성이 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 **. **. 실시설계용역을 준공 처리함으로써 용역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2019. 4., 국토교통부)」 5. 공사시행 단계(시스템 비계)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비계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 등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안전성 계산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준수하여 시스템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설계도서에 포함된 시방서, 가설공사 관련 국가건설기준, 납품자가 제시한 방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설치·해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지침 6. 기타에 따르면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 **. **. □□□에서 시행품의 및 계약의뢰한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시스템비계 공종에 대한 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이 누락된 채로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사 착공 후 공사감독관은 비계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정성을 검토·확인하고, 시공사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및 승인 후 시스템 비계 설치·해체과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고 설계서 상에 관련 시방기준, 도면 등이 없음에도 시스템 비계 공정을 착수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건설공사에 시스템비계 적용 시 설계부터 가설공사 공정 전반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감독업무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주안변전소 내 유희부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부평구 □□□(이하 “□□□”라 한다)에서는 원도심 노후주택 밀집 및 상업 시설이 혼재된 십정동 일원 한국전력 소유의 주안변전소 내 유희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안변전소 내 유희부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이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1. 도시계획시설사업 행정절차 이행 소홀

□□□에서는 십정동 일원 주안변전소 내 유희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한국전력공사(인천지역본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1항에 따라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19**.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으로 결정된 주안변전소 부지 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감사기간 중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의 도시계획시설사업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에서는 토지매입 후 20**. **. **.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 진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 **. **. 인천시에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주차장) 결정(변경)’ 요청을 하였고, 인천시에서는 20**.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 **. **. 부평구 [](이하 “[]”라 한다)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에

서는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그러나 □□□에서는 20**. **. **. 실시계획 고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이전인 20**. **. **. 공사를 착공함으로써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인가부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필증 발급 및 공사완료 공고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준공하여야 함에도 □□□에서는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 **. **.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준공한 사실이 있다.

2.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에서는 20**. **. **.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착공 후 총주차대수 *면을 조성하여 20**. **. **. 준공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실정보고사항에 대하여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주변에 기존 주안변전소 및 저층 주택들이 위치함에 따라 주안변전소 방향은 높이 4m RPP가설방음벽(L=196m), 주택가 방향은 높이 6m RPP가설방음벽(L=94m)을 설치하여 소음 및 분진 등에 대비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준공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사기간 중 RPP가설방음벽 설치 시 주택가 방향은 설계도면대로 적정하게 설치하였으나, 기존 주안변전소 방향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높이를 축소하여 3m 높이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사감독관은 RPP가설방음벽 관련 시공사로부터 실정보고를 받고 설계서를 검토하여 현장여건 조사 및 시공 변경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현장여건 부합 및 안전·환경관리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사에 승인 통보하여 변경 시공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해당 공정이 시공됨으로써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설계서 규격보다 축소 시공한 가설공사비용 1,334,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영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000

내 용

부평구 000(이하 “000”라 한다)에서는 총주차대수 *면 이상인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 *개소를 설치·관리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23호, 시행 2022. 1. 28.)」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61호, 시행 2022. 1. 28.)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따르면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제1항에 따르면 법 제 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에 따르면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1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총주차대수 *면 이상의 노외 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 **. 감사일 현재 총 *개소 중 *개소에서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비율을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에서는 친환경차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23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된 취지에 부합하도록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비율을 미충족한 공영주차장 *개소에 대하여 설치의무 비율을 충족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관련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비율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 요구·기관경고

제 목 도로 기부채납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훈계대상자 ☒☒☒ 지방** g(전 ⊕⊕⊕)

☼☼☼ 지방** h(전 ⊕⊕⊕)

☒☒☒ 지방** i(전 ⊕⊕⊕)

☐☐☐ 지방** j

내 용

1. 도로 기부채납 완료 전 건축물 사용승인 등 건축인허가 업무처리 소홀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적합여부에 대해 해당기관 및 부서 협의 후 사용승인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평구 ☐☐☐는 20**.**.**, **.*.부터 ◎◎동 **-**, **, **번지에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주 m, n, b씨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20**.**.**, **.*./ 20**.**.**, **.*. 건축허가 처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 **.*. 개최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건축선 후퇴로 인해 발생 하는 도로에 대하여(◎◎동 **-**외 총* 필지) 기부채납 의견이 제시되

었고 日日日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20**. **. **. 건축허가 처리 시 건축허가 협의서에 “도로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공사를 실시하고 분할 후 부평구에 기부채납이 되어야 함” 내용을 담아 건축주에게 안내하였고 20**. **. **. 20**. **. **. 착공신고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20**. **. **.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 日日日是 ⊕⊕⊕와 도로기부채납에 대해 협의하였고 ⊕⊕⊕에서는 기부채납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이후 日日日에서는 최종적으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20**. **. **. 사용승인을 처리를 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2. 기부채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업무처리 소홀

부평구 ⊕⊕⊕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규정에 따라 20**. **. **. 토지소유자로부터 ◎◎동 **-* **, **, **번지 건축행위 관련 도로*필지에 대해 기부채납원 관련 서류 일체를 받았고 20**. **. **. 공유재산 취득 내부 방침과 함께 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기부채납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공유재산 취득 내부 검토과정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사권 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사권설정 해제 여부와 기부채납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유자와 협의 및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또한 20**. **. **. 구의회 구정질의 시 “건축허가 관련 기부채납(미완료)

건”이 문제 제기되자 ⊕⊕⊕에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부채납원 등 관련서류 제출을 재 요청한 결과 기부채납 대상 총 *필지 중 *필지는 20**. **. *. 기부채납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필지는 기부채납이 미완료 조치되었음에도 감사 일 현재까지 토지소유자에게 기부채납 의사를 재확인하지 않는 등 구 재산관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재정손실을 초래하였다.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대상 토지의 기부채납 행위가 건축허가 시 부관에 의한 의무행위가 아니며, 건축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임에 따라 토지 기부채납 요구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건축허가 처리 시 건축위원회의 기부채납 권고사항을 수용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 협의서에도 기부채납 토지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기부채납 되어야 함”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동 **-*외 *필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완료된 사항으로 부평구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훈계] 위 대상자 g, h, i, j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건축허가 관련 도로 기부채납이 장기 미완료 되었음에도 걱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엄중 경고하오니 미완료된 도로 기부채납 건에 대해 기부채납 이행 청구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향후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기계식 주차장 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그 주차장에 대하여 사용검사(유효기간 3년) 및 정기 검사(유효기간 2년)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에 따라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 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는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개소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시정지시하고 별도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주차장치 관리인을 미배치한 *개소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도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소홀히 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주차장 미가동으로 인하여 주차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 및 관리인 미 배치 주차장의 소유주 등에게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조치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식주차장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위반건축물 발생 시 행정조치 미이행 등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日日日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2005. 01.)에서는 위반건축물의

시정 명령 횟수,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시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무허가건축 단속지침(제정 2020.03.23. 예규 제93호)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대상 및 행정처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日日日에서는 신규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2회차 시정명령 이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주 및 시공사 등을 고발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신규 발생된 위반건축물 *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등 위반건축물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신규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을 고발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건축물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및 업소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와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에 따라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들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건강기능식품법」 제13조(교육)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시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교육시간)에 따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제4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자와 「건강기능식품법」 제47조(과태료)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 최대 60만원을 구청장은 부과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행정처분대장 등)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은 법제71조, 법제72조, 법제74조부터 법제76조까지, 법제79조 및 법제8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영업등록을 취소한 경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생년월일, 취소 또는 폐쇄 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 등을 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에서는 20**~20**년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자로 통보된 *건 중 *건만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건은 영업장 확인 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수수료 여부를 재차 확인 후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과태료 처분이 불가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위생교육 수수료 *개 영업소(중복 *건, 처분진행중 *개소 제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영업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위생교육 수수료 업소에 대해 현지확인 하시고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명령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범죄경력조회 일부 미 실시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관련기관⁵⁹⁾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노인학대관련 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

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따른 관련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관련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종사자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관련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범죄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지역보건법」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의료급 의료기관)나목·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평구 △△△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인을 채용할때는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를, 의료 기사에 대해서는 노인학대관련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와 그 외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관할 경찰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는 20**~20**년에 채용한 *명(□□□ *명, ▣▣▣ *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등 일부만 조회하였고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2021.6.30.)이후 채용중이거나 신규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경력조회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현재 채용중인 의료인, 의료기사 및 그 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계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시고, 관계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존 절차이행 소홀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진료기록부)나 제23조(전자의무기록)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분 3년 각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제4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평구 ㉠㉠㉠(이하 '㉠㉠㉠'라 한다.)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인 20**년~20**년에 총 *건의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처리와 *건의 진료기록부 자체 보관을 허가하였다.

㉠㉠㉠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최대 10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는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첨부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θ θ θ 의원' 등 **개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를 휴·폐업신고서의 붙임 서류로 잘못 인식하고 휴·폐업일 당일 휴·폐업 신고서와 같이 제출받고 처리함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기록·보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의료기관 휴·폐업 관리 소홀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 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에 따라 구청장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하고 휴·폐업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에 따르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에서는 20**년~20**년 총 *건의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건 중 입원실을 보유한 병원 *개소의 휴·폐업 신고서에 세탁물의 처리에 관한 서류 및 입원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전원 등의 조치결과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고

확인조치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없이 휴·폐업 신고를 처리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① 「의료법」에 따라 휴·폐업 신고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자체 보관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휴·폐업 시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계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절차 누락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4항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인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4조(과태료)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위반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보건교육 또는 금연교육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100분의 50(보건교육 또는 금연교육) 또는 전액 감면(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을 할 수 있고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감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유예기간동안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제17조(과태료

의 부과)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부평구 ㉠(이하 ‘㉠’라 한다.)에서는 20**년 ~20**년 금연구역 단속 결과 총 *건을 적발하여 *건의 과태료 처분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감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건을 감면 처리하였다.

그리고 ㉠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과태료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재적발된 대상자에게 부과된 *건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과태료 부과 하는 등 행정절차를 누락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한 교육 시 기존과태료 감면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중 재적발 시 이수 진

행 건, 재적발 건 모두 과태료 100% 부과로 교육하여 사전통지 없이 부과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행한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Ⅲ-3.금연구역 단속 결과조치(과태료 부과)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업무 적용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모두 과태료 100%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모두 감면적용하지 않는다’의 의미로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제공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①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및 종합보고서 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부평구 ▶▶▶(이하 ‘부평구’라고 한다)는 관내 장수산을 비롯한 7개의 주요 산과 *ha 산림 및 가로수 *주 등의 도시숲 조성·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숲길 조성·관리 사업,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병해충 방제사업, 학교숲(명상숲) 조성사업 및 바람길(생성숲) 사업 등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한다)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따르면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산림사업은 ① 제13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⁶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③ 그 밖에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발주청은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⁶¹⁾를 통보하여야 하고, 심사결과가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발급하고, 부적정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기술법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제5항,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따라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

- 6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가.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벌채사업
다.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또는 숲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라.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이하 “사방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이라 한다)
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원 조성사업”이라 한다)
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장림 조성사업”이라 한다)
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복원사업”이라 한다)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사업. 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 61)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산림사업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영향은 없으나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산림사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표 5의 항목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관리하고, 산림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 및 산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는 최근 *년 간(20**년~20**년) “○○○공사 시행” 등 *개의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의 사업은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미수립하였고, “▽▽▽사업”은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준공 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이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사업을 준공하는 등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및 종합보고서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안전한 산림사업의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및 종합보고서 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백운근린공원 4단계 조성사업 추진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부평구 ▶▶▶(이하 ‘부평구’라고 한다)는 백운근린공원(’**.**.*. 공원결정, 면적: ***m²)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 하고 같은 해인 ’**. **월 1 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 **월 2단계 사업, ’**. **월 3-1단계 사업, ’**. **월 3-2 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 **월~**월 4단계 사업을 준공하여 공원 결정 후 **년 만에 장기 미집행되었던 백운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였다.

1.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공사에정금액의 규모별 건설 배치기준에 따라야 하며, 공사에정금액이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현장배치기준은 [표]와 같다.

【표】 공사에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사에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자료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재구성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배치 사실을 발주자로부터 현장배치확인표에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는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2조(현장대리인 교체) 제1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이 해당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으로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 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는 건설사업자인 (주)○○○이 착공계와 함께 제출한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 관련 서류(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건설기술인 v(*****-*****)가 해당 직무분야인 조경초급에 해당하고 조경공사 현장경력이 *일(*년 *일)로 [표]와 같이 해당 공사의 예

정금액 1,023백만원(도금액: 889백만원, 관급액: 134) 규모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적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후 현장대리인 v의 퇴사를 이유로 20**. **. *.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적합한 x(조정 중급)으로 변경될 때까지 *일간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확인에 소홀하였다.

2. 환경보전비 산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때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 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공사 원가계산)에 따르면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경비의 세비목은 운반비, 가설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⁶²⁾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62)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환경오염 방지시설)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건설공사 작업 중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로서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 방음벽 등 소음·진동 방지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침사 및 응집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침 제6조(환경보전비 산출기준)에 따르면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하여야 하고, 공사 발주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직접공사비 부분의 산출은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구는 백운근린공원 4단계 조성공사 설계(변경) 시 세륜시설 및 침사지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직접공사비에 계상하면서 규정과 다르게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하여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지 않아 원가계산서의 간접비 상승으로 준공금액 기준 1,384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설계(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제2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 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지침 제135조(시공상세도 승인)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상세도를 시공자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시공을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침 제138조(시공 확인)에는 공사감독자는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단계별 시공상태 등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르면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평구는 백운근린공원 4단계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현장의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사현장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경계에 가설울타리(EGI휀스, H3.0m, 6개월) 599m를 공사설계내역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가설울타리 시공비용 산출은 강관 지주 설치 및 해체품은 지주간격 2.0m, 지주높이 3.5m이하를 기준으로 '2022년 건설공사표준품셈 2-4-1 강관 지주 설치 및 해체'를 적용하였고, 가설울타리 재료는 설치기간 6개월 기준으로 EGI (전기아연도금강판) 33%, 동바리(주주파이프 등)와 연결재(클램프 등) 등은 10%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부평구는 백운근린공원 4단계 조성공사의 가설울타리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상세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수급인 (주)○○○이 지주간격을 설계도면의 2.0m가 아닌 3.0m로 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재시공토록 지시하거나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을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 **. *. 공사를 준공검사 처리하여 계약금액 기준 5,487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초과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백운근린공원 4단계 조성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된 가설울타리에 대한 과다 지급액 5,487천 원을 환수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건설공사 건설기술인을 현장배치를 결정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에정금액 규모별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확인·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에 계상하는 경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직원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 권고

제 목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산출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관 계 부 서 ▶▶▶, ※※※

내 용

부평구 ▶▶▶(이하 ‘부평구’라고 한다)는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관내 부평대로 외 *개 노선에 대하여 가로수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1. 개발사업에 대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⁶³⁾(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받아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고,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구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⁶⁴⁾(이하 ‘가로수조례’라고 한다) 제18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4항에 따르면 가로수 조성 등에

63)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20호, 2020. 5. 26., 일부개정]

64) [시행 2020. 6. 2.] [인천광역시조례 제6405호, 2020. 6. 2., 일부개정]

소요되는 비용은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19조(원인자부담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목이식·제거·원상복구 등의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도로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다만, 원인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일 현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⁶⁵⁾」(이하 ‘도시숲법’이라 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해당하는 가로수의 옮겨 심기 등의 행위⁶⁶⁾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⁶⁷⁾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고,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65)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제정]

66)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1. 가로수의 바꿔심기, 2. 가로수의 메워심기)

67)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2. 「도로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제3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제33조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

제35조에 따른 도로공사 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한 자

제37조에 따른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

등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자

‘도시숲조례’라고 한다)제15조(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르면 가로수는 관리청이 조성·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은 가로수 조성·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려는 자에게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6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및 제17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에 따라 가로수 관리청 외의 자가 도로의 신설(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새로 심기, 바꿔심기, 옮겨심기, 제거 등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시숲법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도시숲등 조성·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 필요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숲법 시행규칙 제13조(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 제1항 제3호에는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⁶⁸⁾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상회복 비용의 기준으로 하고,

도시숲조례 제30조(원인자부담금)에는 관리청은 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붙임] 참고)의 원인자부담금

68) 도시숲등 조성·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 필요한 행위

부과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는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가로수 조성주체⁶⁹⁾와 소요비용, 부담금 산정 등의 임의규정⁷⁰⁾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내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등에 따른 가로녹지(가로수) 조성 기준(변경)” 내부 검토보고서[▶▶▶-***-(20**.**.*)]를 수립하여 부평구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의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① 활용 가능 가로수는 이식(원칙) ② 신규개설 도로를 포함한 가로수의 조성 등(제거 및 신규식재)은 원인자가 실시 하되, 부평구의 철저한 검수 후 준공처리 ③ 가로수 조성(신규식재) 비용은 감하고 차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2안)⁷¹⁾ 및 하자이행증권 제출 의무화 등이며, ③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가 기존에 가로수가 없었으나 개발사업으로 신규 개설한 도로에 가로수를 신규로 식재하는 경우 그 비용 또한 부담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담금 산출에 관한 내용 중 첫째, 개발사업에 따라 신규 개설한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한 경우 이 비용을 부담금에서 감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도시숲법 제22조의 도시숲등⁷²⁾ 원상회복명령은 근본적으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서 즉, 기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69)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20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2항에는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70) 구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6. 2.] [인천광역시조례 제6405호, 2020. 6. 2., 일부개정] 제19조 (원인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목이식·제거·원상복구 등의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도로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1) 1안) 기존 가로수 제거비용 징구와 신규조성 비용 부담
2안) 기존 가로수 제거비용에서 신규조성 비용 감한 차액 징수
3안) 신규조성을 원상복구로 같음하여 추가징수(비용부담) 없음

72) 본 처분요구서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사항임.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신규개설 한 도로는 기존 가로수가 존재 할 수 없음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숲법 제12조 제2항 및 도시숲조례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가로수를 조성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은 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비용을 부담금에서 감하여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둘째, 도로의 확장 등으로 가로수관리청과 협의하여 기존 가로수를 제거하고 새로운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 이 비용을 부담금에서 감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담금의 세부적 비용 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숲조례 별표1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원인자가 가로수를 옮겨심거나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도급공사 설계비⁷³⁾를 부과금액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 식재하는 가로수⁷⁴⁾의 비용을 감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도시숲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도시숲조례 제30조에서 부담금을 ‘가로수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원인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개발 및 재건축 등 기존 도심의 개발사업으로 가로수의 이식 등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가로수는 중대형목인 경우가 대다수로 수목 근원부가 도로 경계석과 접합, 도로 지하매설물과 뿌리가 엉켜 자람, 식재기반 불량 등으로 수목 이식을 위한 분뜨기(근원직경의 4~6배 이상 요구)의 어려움, 뿌리 절단으로 수분 증발 저감 및 T/R율⁷⁵⁾ 조절을 위한 수관부의 가지치기가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

7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74) 기존 가로수와 비교하여 수종 변경, 작은 규격 등 원상복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75) 수목의 지상부(Top)와 지하부(Root)의 중량비율을 말하며, 대체로 1에 수렴함.

할 때 기존 가로수의 원상복구(회복)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관리청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격⁷⁶⁾의 새로운 가로수를 식재하여 현장의 환경조건 및 토양기반에 적응하도록 조성·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부담금에서 새롭게 조성한 가로수의 조성 비용을 감하여 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 시 각 군·구별 부담금 산출기준을 조사한 결과 관리청 간 그 기준이 달라, 이로 인한 가로수 행정 불신 및 개발사업자(원인자)의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대하여 부평구는 도시숲조례에 원상복구 범위 및 정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담금 상계의 기준이 애매하고 조합에서 관리청과 협의하여 신규 식재한 가로수 또한 원상복구(회복)의 범위로 보아 식규 식재 비용을 감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였으며, 도시숲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가로수 식재 구간에 빗물투수 시설 등의 가로수 제반사항 등의 비용 또한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음으로 개발사업으로 신규 개설한 도로에 가로수를 신규 식재하는 비용까지 부담금에서 감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담금이 기존 가로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기존 가로수의 부담금 산정은 도시숲조례 제14조 제4항과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함께 고려할 수도 있지만, 신규 개설 도로에 새롭게 조성하는 가로수는 도시숲조례 제14조 제4항 규정만을 적용해야 함에도 기존 가로수의 원상복구 개념을 잘못 인용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76) 통상 B(흉고직경) 10~15cm [가로수 식재폭 1m 기준 가로수 뿌리분 고려 R(근원직경) 20cm(B16.6cm) 최대]

2.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세부산정에 관한 사항

도시숲법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도시숲등 조성·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 필요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 제1항제3호에는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경우⁷⁷⁾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상회복 비용의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숲조례 제30조(원인자부담금)에는 관리청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고, 부담금의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르며, 이 중 ① 가로수 옮겨심기 또는 제거하는 경우, ② 가로수 관리시설에 대한 피해 및 기타(비고) 사항은 [표1]과 같다.

77) 도시숲등 조성·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 필요한 행위

【표1】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부과대상	시행구분	부과금액 산출	비고
1. 옮겨심기 또는 제거하는 경우	관리청 시행	• 공사: 도급공사 설계비	
		• 직영: 옮겨심기 경비 또는 제거비	
	원인자 시행	• 도급공사 설계비	
5. 가로수 관리시설에 대한 피해	관리청 시행	관리시설 재료비 + 작업비	
※ 비고 1.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2. 수목가격: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가격 적용 3. 원인자가 시행할 경우 도급공사설계비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관리청의 승인 전 제출하여야 하고, 하자책임 담보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 자료출처 : 부평구 제출자료 재구성

가로수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식재 후 수목의 활착 기간 동안 수목을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뿌리분의 흔들림을 방지하여 수목의 원활한 활착을 돕기 위하여 수목지주대를 설치하며, 토양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개선하고 수목의 생장을 위한 영양분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료를 시비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러한 수목지주대의 규격 및 시비량은 해당 수목의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건설공사의 하나인 조경공사의 원가계산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정한 건설공사표준품셈(이하 ‘표준품셈’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표준품셈에 적정한 품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품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조경공사 적산기준」⁷⁸⁾을 표준

78) 2020.9.22. 3차개정판 발행.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한국조경협회

품셈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조경공사 적산기준」 4. 식재공사에는 수목 시비량 기준을 [표2]와 같이, 그리고 수목지주대 설치기준을 [표3]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2】 수목 시비량 기준

성 상	규 격			시비량(kg)
	수고(m)	흉고직경(cm)	근원직경(cm)	
교 목	H1.0 ~ 2.0	B4 이하	R7 이하	5
	H2.1 ~ 3.0	B5 ~ 7	R8 ~ 9	10
	H3.1 ~ 3.5	B8 ~ 11	R10 ~ 14	15
	H3.6 ~ 4.0	B12 ~ 17	R15 ~ 24	20
	H4.1 ~ 5.0	B18 ~ 24	R25 ~ 30	30
	H5.1 ~ 6.0	B25 ~ 29	R31 ~ 39	40
	H6.1 이상	B30 이상	R40 이상	50
관 목	H0.5 이하			0.5
	H0.6 ~ 1.0			1.0
	H1.0 이상			2.0

※ 자료출처 : 「조경공사 적산기준」 재구성

【표3】 수목지주대 설치기준

명 칭	기준 규격(mm)	수목 규격		
		수고(m)	근원직경(cm)	흉고직경(cm)
이 각 형	Φ45×L1200	3.0 이하	6 이하	5 이하
삼발이 소형	Φ45×L1500	3.1 ~ 4.0	7 ~ 12	6 ~ 12
삼발이 중형	Φ60×L1800	4.1 ~ 5.0	13 ~ 25	11 ~ 20
삼발이 대형	Φ60×L2700	5.1 이상	26 이상	21 이상

※ 자료출처 : 「조경공사 적산기준」 재구성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가로수의 규격에 따라 수목 시비량 및 지주대의 규격을

달리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모든 규격의 가로수에 대하여 시비량은 유기질비료 10kg, 수목지주대는 $\Phi 40 \times L1500$ 규격을 적용하여 관련 규정과 다르게 부담금을 과소 산출하는 등 부담금 관련 업무에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재수립하는 등 가로수 조성·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장은**

[권고]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인자가 가로수관리청과 협의하여 기존 가로수 식재 노선에 새로운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로수 식재 비용을 감한 금액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장등록업체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따라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률 제16조(공장의 등록)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 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 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

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세부업종변경사항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구청장은 공장이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⁷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공장의 등록) 제6항 각 호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공장의 등록)에 따라 구청장은 제9조(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그러나, 부평구 에서는 공장등록시스템 상에서 국세청 폐업 자료정보를 조회하여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20**년 *개소, 20**년 *개소, 20**년 *개소 총 *개소 공장이 무단 폐업을 하였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등 등록된 공장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79) ①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②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③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한 공장에 대하여 공장등록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승강기) 구매 검토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ㅇㅇㅇ

내 용

부평구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에서는 노후·협소한 동 행정복지 센터를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편의 기능의 맞춤형 공공청사로 건립하고자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건축·기계·토목)’를 추진하였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에 의하면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발주공고 기관이 직접구매(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 2(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제1항3호에 의하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직접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관계사실

부평구 ㅇㅇㅇ에서는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승강기의 경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임에도 최초 설계 반영 시 사급 자재(ㄱㄱ엘리베이터)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설계의 경제성검토(VE) 제안⁸⁰⁾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변경하라’는 제안을 채택⁸¹⁾하여 관급자재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ㅇㅇㅇ에서는 승강기를 관급자재로 발주하기 전 중소기업 승강기 업체(ㄴㄴ엘리베이터)로부터 도면 검토 및 현장 사전조사 결과 도면과 같이 내폭가로 2,400mm, 세로 1,900mm로 시공하였고 현재 시공된 승강로에 기계실 없는 승강기 17인용은 조달청 관급업체들은 설치가 어렵고, 사급업체가 가능하다는 실정보고를 접수받았다.

따라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규정에 의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의하여야 함에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사용자재 조정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변경⁸²⁾ 하는 등 관련법령 및 규정등의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설계VE 제안서 통보(***-***, 20**.**.**.)

81)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설계VE 결과 송부(***-***, 20**.**.**.)

82)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계) 설계변경 시행(ㅇㅇㅇ-***, 20**.**.**.)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부평구 대로 가로등 보수공사(연간단가) 감독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부평구 ⊕⊕⊕(이하 “⊕⊕⊕”라 한다.)에서는 관내 대로(폭 20m 초과) 등의 가로등 긴급 민원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유지관리로 야간 도로이용자의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범죄 및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평구 관내 대로(경원대로 등 *개 노선)에 ‘부평구 대로 가로등 보수공사(연간단가)’를 시행하였다.

1.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제131조(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사 시공단계에서 공사감독자에게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접수하고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부평구 대로 가로등 보수공사(연간단가)의 설계서인 공사시방서에 시공 전 자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주요 자재인 LED 등기구, 등주, 전선관, 케이블 등에 대하여 공사 시공 전 시공자로부터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계법규 및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물품 구매 계약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미준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단가계약)에 따른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서는 20**년 부평구 가로등 보수공사(연간단가)를 추진하면서 철제 가로등주 등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건, 총 58,853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3. 준공검사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의9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인천광역시)」에 따르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며, 발주기관에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와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르면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년 부평구 가로등 보수공사(연간단가)의 계약상대자인 (주)◆◆에서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에 참여 상용근로자 명부를 제출하였고, 추후 상용근로자가 아닌 자를 당해공사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의 노무자로 포함될시 즉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를서를 제출하고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주)◆◆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류 및 안전관리용품 개인별 지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지급대상에는 신고서의 참여 상용근로자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게 안전관리용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주)◆◆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에 상용근로자가 아닌 자를 당해 공사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의 노무자로 포함될 즉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를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참여 상용 근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근로자가 포함된 합의를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에서는 준공검사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준공을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주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를 숙지하여 설계 및 검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제1항에 따라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허가기준) 별표1에서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또한 최저보유 차고면적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20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허가기준으로 하고 있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1대)인 경우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광역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허가를 받은 경우나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에 따라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관계사실

부평구 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임대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하여 차고지 임대기간 연장 또는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여 변경 허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일 사업 전부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1차 행정처분 후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2차 허가취소’를 하여야 함에도 최초 안내문 발송 후 조치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만 추가(2~5차례) 안내문을 재발송하여 차고지 임대기간 갱신 등을 확인 처리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임대기간이 만료된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전기공사 지급자재 및 재입고 자재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

내 용

부평구 ⊕⊕⊕(이하 “⊕⊕⊕”라 한다.)에서는 노후 도로조명 보수 및 기준 조도 미달지역 내 도로조명 신설,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쾌적한 야간통행환경 조성과 고장 등 민원사항 신속처리로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부평구 관내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1. 지급자재수불부 관리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56조(지급자재 청구 및 출고)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지급자재 청구가 있을 경우 품명, 규격, 수량, 사용처가 명시된 자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 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지급자재수불부에 기록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서는 ○○동 내 부지에 컨테이너 자재창고를 관리 하면서 20**년 연간단가 지급자재인 ‘수신기’를 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별도로 지급자재 수불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안등 시설물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로 위탁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인 ‘전선’, ‘안정기’ 등은 공사 구분에 따른 품목, 규격별로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림1]과 같이 보관되어 있다.

[그림1] 부평구 ⊕⊕⊕ 자재창고에 보관 중인 지급자재



따라서 예시[그림2]와 같이 컨테이너 안에 선반을 설치하고 공사 품목, 규격별 자재의 선입선출이 용이토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재고 수량관리 등의 지급 자재수불부 기록을 통하여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림2] (예시)



2. 재입고 자재 관리 소홀

⊕⊕⊕에서 재입고하는 자재는 먼지, 오염, 파손 등을 고려하여 보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전기용품 특성상 물에 젖지 않도록 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가 적당한 곳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는 부평구 관내 재개발 지역에서 한전주, 통신주 철거시 발생되는 보안등기구 자재(20**년 발생)에 대해서도 지급자재 수불부에 별도로 입고 처리하여 향후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림3]과 같이 자재 창고에 별도로 정리하여 보관·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급자재 망실과 훼손으로 인한 지급자재 사용불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자재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림3] 자재창고 내 보관 중인 재사용품(보안등 기구) 현장확인 사진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앞으로 법령에 따라 지급자재 수불부 작성 및 자재창고를 공사 구분에 따른 품목, 규격별로 정리하고 재사용품 입고 자재도 망실과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평구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구 분	제 목	관련부서
수범사례 1	(지역특성에 맞는)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소통담당관
수범사례 2	주민 주체의 마을갈등조정단·이웃소통방 운영	소통담당관
수범사례 3	드론을 활용한 공공분야 행정혁신	토지정보과
수범사례 4	지역사회 거동불편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미(美)드림 봉사단』 운영	위생과
수범사례 5	찾아가는 집수선 서비스 「우리동네 맥가이버」	도시개발과
수범사례 6	2020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공원녹지과
수범사례 7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건강증진과
수범사례 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	환경보전과

수범사례1 [지역 특성에 맞는]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 추진 배경

○ 공공갈등 관리제도 도입 배경

- 전국적으로 가치와 이익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
- 지방정부에서 지역 내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필요
- 2011년 2월, 십정동 지역 송전선로 이설에 대한 갈등 사안 해결을 위해 중립적 제3자인 「공공갈등조정관」에게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사례가 직접적인 도입의 계기

○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배경

- 부평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서 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한 지역으로서 높은 공공갈등 발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대두
-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주민 밀착형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지자체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
-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하고 다음 해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갈등관리 전담팀 신설, 갈등관리 조례 제정, 물리적 거점 마련 등 차근차근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갈등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옴

법적 기반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2014.4.7.)
갈등관리 기구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5기 구성·운영 - 위원장 포함 15명(외부 위촉위원 12명, 구청 내부 위원 3명) ○ 마을갈등조정단 운영 : 주민조정가 18명
인적 네트워크	○ 갈등관리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MOU협약) - 7개 기관 ○ 갈등관리·조정 및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전문가POOL 구축
공간적 기반	○ 갈등관리힐링센터 (2017.2.28. 개소) -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소규모 갈등조정, 포럼 등 개최 - 이웃소통방 운영으로 주민 소통 및 공동체갈등 주민자율조정
사업 지속성 및 확장성 확보	○ 갈등관리종합계획 수립(매년) ○ 공공갈등 및 공동체갈등 관리체계 구축 ○ 주민과 공직자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구축

□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 특징

○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공공갈등 관리

- 전국 최초 공공갈등조정관 제도 도입 기관으로서 안정적 갈등관리 시스템 정착을 통해 매년 수범사례 및 국내 최초 사업 발굴
- 타 기관·지자체의 벤치마킹 기관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각종 갈등관리 사례 경진대회 수상 등을 통해 우수사례 전파와 확산 진행 중

○ 지속가능한 갈등관리 기반 마련

- 갈등관리기구 운영 활성화 및 전국 최초 갈등관리힐링센터 개소를 통한 공간적인 거점 확보, 조례 제정을 통한 활동 근거 마련, 풍부한 갈등 전문 인력과의 협력체계 구축(MOU) 등을 통해 사업의 확장성 및 지속성 확보

○ 행정체계 내의 갈등관리

-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된 갈등관리팀 내에 공공갈등 관리, 공동체갈등 관리, 공직자와 주민의 갈등역량 강화 교육 및 힐링 담당으로 업무 세분화
- 갈등관리팀 직원이 총괄 관리하는 주민 자율 조정의 마을갈등조정단 운영
- 공공갈등 현안 발생 시 사업부서, 관계부서(기관), 갈등관리 총괄부서(소통담당관)가 모여 논의하는 내부현안검토회의를 통한 대안 마련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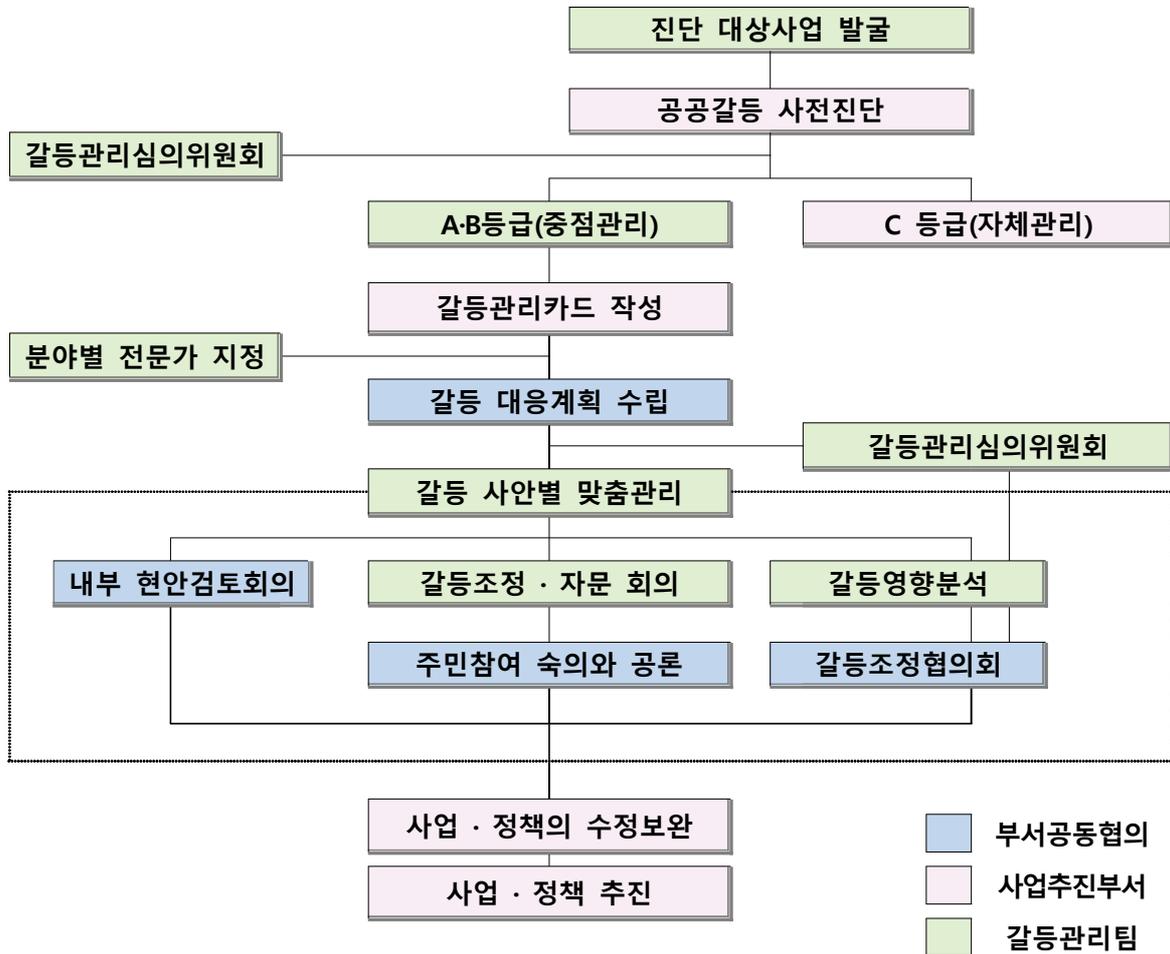
○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과정

- 2011년: 국내 최초 「공공갈등조정관」 제도 도입
- 2012년: 공공갈등조정관 임용, 재개발·재건축 지역 실태 파악
- 2013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발간
- 2014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2015년: 갈등관리조정팀 신설, 갈등영향분석 실시
- 2016년: 갈등전문기관과 MOU 체결, 직원심리건강진단사업 시행
- 2017년: 갈등관리힐링센터 개소, 갈등조정 및 갈등교육 체계화
- 2018년: 마을갈등조정단 주민조정가 양성, 갈등관리·힐링 신규 프로그램 개발
- 2019년: 구 주요사업 갈등 사전진단 실시, 마을갈등조정단 운영
- 2020년: 이웃소통방 운영, 주민자율조정 실행매뉴얼 개발, 공동체소통회의 및 경청회 운영
- 2021년: 공공갈등 관리대상 사업별 전담 전문가 지정, 갈등조정마당 운영
- 2022년: 갈등관리 유공자 표창, 일선 공무원을 위한 갈등관리 안내서 제작

○ 공간적 기반 마련

- 의미: 전국 최초 갈등관리 전담 거점으로서 공간 마련(면적 : 393.6㎡)
- 명칭: 부평구 갈등관리힐링센터
- 건립: 2016.1. ~ 2016.12. (※개소식 : 2017.2.28.)
- 위치: 부평구 평천로 26-47,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건물 3층
- 기능
 - 공직자 및 주민 대상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몸과 마음을 치유·개선하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심리정서 지원사업)
 -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회의 구성 및 지원
 - 지역사회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진행
 - 주민조정가에 의한 이웃소통방 운영 등 주민 소통 및 자율조정의 공간

○ 갈등관리 흐름도



○ 공공갈등 사전진단 실시

- 목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공공갈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등급별 관리를 진행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갈등 발생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갈등 관리 진행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추구
- 관리체계

갈등 진단(1단계)	갈등관리 전략 수립(2단계)	공공갈등 관리(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진단표 작성 · 갈등 등급 부여 · A·B등급 중점관리 · 공공갈등 관리카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대응방향(사업부서) · 갈등관리지원 방안(소통담당관) · 갈등 대응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 관련부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관리카드 현행화(반기별) · 사안별 갈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조정마당 - 갈등영향분석, 갈등코칭·컨설팅 지원 - 갈등현안 관련부서(기관) 연석회의 등

- 진단 절차



- 진단 시기: 매년 2월~3월

○ 갈등영향분석 실시

- 운영 목적
 - 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구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 사안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 설계
- 주요 내용
 - 이해관계인 확인 및 심층 인터뷰, 갈등 유발요인, 주요 쟁점, 사회적 영향 파악, 갈등 예방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 시행 내역

연도	용역명	수행기관
2016	부개동 지하보차도 갈등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2017~2018	부평역 노점상 갈등	한국갈등학회
2019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단국대산학협력단
2021	군부대 통합재배치 갈등	사단법인한국갈등학회
2022	공동체 갈등관리전략 수립	갈등해결과 대화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사항
 -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 갈등영향분석, 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 구성: 총 15명 [외부 위촉위원(12명), 내부 위원(3명)]
- 제5기 부평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2년(2022.12.23.~2024.12.22.)
- 개최시기: 사안 발생 시(2014년 이후 연간 본회의 4~5회, 소위원회 3~4회)

○ 갈등관리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대상: 부평구 공직자 및 주민
- 내용

대 상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마음건강 힐링교육	맞춤형 테마교육
주민	· 주민조정가 양성 (심화)교육 · 부평형 공론화사업 운영 인재 · 청소년 갈등해결 워크숍	주민힐링데이 운영 · 바디스트레칭 요가 · 춤 테라피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룹별 주민교육
공직자	· 갈등기본교육 · 갈등심화교육 · 전직원특강	· 힐링 기본교육 · 힐링 심화교육	부서 맞춤형 테마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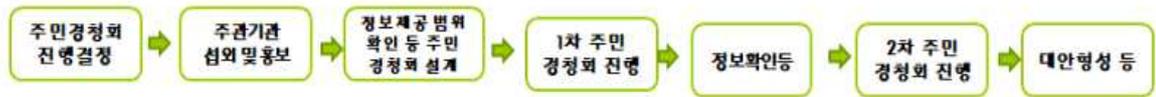
□ 주요성과

○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형 공론문화 모델 발굴

- <공동체 소통회의> 운영
 - 이해당사자가 모여 숙의토론 후 스스로 합의를 도출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공동토론)인 <공동체 소통회의>모델 발굴로 부평형 공론문화 조성 기틀 마련
 - 문화의거리 연장조성사업 갈등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2022년 6월)
 - 제1차 공동체 소통회의(2022.2.24.) 참석자
: 상가변영회(11명), 부평서초등학교(2명), 부평구의원(3명), 부평구 관련부서장(4명)
 - 제2차 공동체 소통회의(2022.6.30.) 참석자
: 부평1동주민(14명), 부평서초등학교(3명), 학부모대표(5명), 상인회(9명), 부평구 관련 부서(3개 부서)

- <경청회> 운영

- 부평구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쌍방향의 주민 소통 방식
- 중립적 전문가가 진행하며 사업부서가 직접 주민에게 사업설명(정보제공)하고 질의응답 함
- 주요 절차



- 2020.10.27.~2021.9.27. 군부대 통합재배치 사안(갈등영향분석 동시 시행)
- 총 14회 진행(해당 지역주민 114명 참여)
- 취합된 부평구민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인천광역시, 국방부)

○ <갈등조정마당> 운영

- 주민 간 마찰(갈등) 등이 심화·장기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해당사자 간 대화와 협의의 자리를 행정에서 마련
- 소통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방지 및 갈등 해결 경험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운영사례

연번	사업명	갈등 당사자	신청연도	결과
1	예초 어린이집	어린이집↔빌라 주민	2015	갈등 해결(2015)
2	한전 주민공동지원 사업(뜨란채)	한전, 주민대표↔민원인	2015	갈등 해결(2015)
3	부평공원 시선유도봉	카페 상인↔주민	2017	갈등 해결(2017)
4	대정초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입대위 대표	2020년	갈등 해결(2020)
5	부평종합시장 상인/노점 갈등	상가 상인↔노점상인	2020년	갈등 해결(2020)
6	제일고 수목 제거	학교↔주민↔민원인	2020년	갈등 해결(2021)
7	산곡초 통학로 설치	학부모↔상인	2021년	갈등 해결(2021)
8	굴포천먹거리타운 로봇주차장 조성	구청↔민원인	2022년	갈등 해결(2022)
9	SK해모루뷰아파트 동경계 조정 갈등	주민↔입주예정자	2022년	갈등 해결(2022)

○ 갈등 해결을 위한 내부 협업체계 구축 안정화

- 내부현안검토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정착
- 갈등 현안 발생 시 사업부서 및 관련부서(기관)가 모여 논의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협업하는 문화가 부평구 조직에 정착
- 2022년 내부현안검토회의의 진행(10회), 관계기관 현안검토회의의 진행(4회)

○ 공공갈등 관리대상사업 선정·관리

- 내용: 사전진단 후 A와 B등급 사업 공공갈등 관리대상사업 선정 갈등관리

연번	사업명	갈등 당사자	선정 연도	결과
1	부평 문화의거리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상인회↔반대 측 상인	2014	갈등 해결
2	한마음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토지주	2015	갈등 해결
3	도시형 생활주택 난립에 따른 불편	부평구↔구민	2015	갈등 해결
4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비조합↔부평구, 인천시	2015	갈등 해결
5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	부평구↔구민	2015	갈등 해결
6	부평구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인상	부평구↔주민	2015	갈등 해결
7	부영공원 오염 토양 정화작업	국방부↔부평구	2015	갈등 해결
8	부개서초 인근 지하 보차도 설치공사	부평구, 철도공사 ↔ 인근 주민↔부개서초교	2015	갈등 해결
9	통합예비군훈련장 산곡동 이전 갈등	국방부↔부평구	2015	갈등 해결
10	청천동 화물차 전용 주차장 내 불법 가설건축물 철거	부평구↔장애인단체	2016	갈등 해결
11	영성마을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부평구↔주민	2016	갈등 해결
12	동암역 남부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부평구↔ 학부모, 학교	2017	갈등 해결
13	노점상 갈등	노점↔상인↔부평구	2017	갈등 해결
14	만월산터널 방음벽 설치 및 소음 대책	부평구↔주민↔NH공사	2019	갈등 해결
15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평구↔주민	2020	갈등 해결
16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부평구↔상인	2020	갈등 해결
17	삼산동 특고압 관련 갈등	한전↔주민	2019	갈등 해결
18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한전↔주민	2019	갈등 해결
19	문화의 거리 연장 조성사업	상인↔주민, 부평구↔상인	2022	갈등 해결
20	청천2구역 재개발 내 문화시설 건립	재개발조합↔학교·학부모	2022	갈등 해결

○ **갈등 예방 및 갈등관리 의식 향상**

- **사업부서 담당자를 위한 공공갈등관리 안내서 제작 및 사업부서 배포**

- 전국 최초로 갈등관리 담당자를 위한 업무매뉴얼이 아닌 일선 공무원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안내서 제작·배포(2022.12월)
- 부평구 실사례와 갈등관리에 참여한 부평구 재직 공무원 소감을 수록해 갈등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친근함 및 실무 활용 효과 증대

- **부평 갈등과 치유 포럼 개최**

- 목적: 지자체 특성에 맞는 갈등관리 발전방안 마련
- 개최 내역

연도	내역	주제
2017년	제1회	부평구 갈등관리힐링센터의 역할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갈등의 다양한 조정방식 모색
	제3회	갈등 해소와 공동체 관계 회복을 위한 치유적 요소
2018년	제4회	부평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갈등관리
2019년	제5회	공동체 회복 및 주민참여형 갈등관리 방안 모색
2020년	제6회	바람직한 군부대 통합 재배치 방안
2021년	제7회	공병단 부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방안
	제8회	안전하고 쾌적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의 과제
2022년	제9회	공유와 확산을 통해 지역형 갈등관리의 이정표 찾기
	제10회	부평구 갈등관리대상사업의 현황과 전망

- **공직자 및 주민 대상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공직자: 간부 및 신규 공무원, 민원담당자, 부서별 교육 등 대상별 실시
- 주민: 일반 성인 및 청소년 등으로 대상별 맞춤형 갈등관리 교육 실시 및 중·고등학생 대상의 갈등관리 워크숍 진행

연도	주민		공직자	
	교육 횟수	참석인원	교육 횟수	참석인원
2017	18회	237명	48회	1,105명
2018	24회	463명	26회	297명
2019	29회	550명	40회	636명
2020	26회	337명	9회	156명
2021	24회	515명	14회	304명
2022	25회	316명	11회	251명
합계	146회	2,418명	148회	2,749명

○ **갈등관리 우수사례 전파 및 확산**

- 행정안전부 주관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지자체 협력·분쟁 해결 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4년 연속 수상 및 사례집 수록

- 수상 내역

연도	내역	사례명
2019년	최우수상	부평형 갈등관리운영체계
2020년	우수상	이웃소통방 운영(층간소음 등 생활분쟁 조정)
2021년	장려상	갈등조정마당 운영(통학로 주민&상인 갈등 등)
2022년	최우수상	문화의 거리 연장조성사업 관련 갈등 해결

- 인천 민·관 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및 사례집 수록

- 특고압 설치 관련 갈등현안을 주민·시민사회·정당이 참여하는 민·관대책 위원회 구성, 이해관계 기관과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로 해결
- 공식 회의(13회), 비공식 회의(47회)를 통해 소통·협치로 장기 갈등을 해결

- 타 기관의 부평구 우수사례 견학 방문(벤치마킹) 요청에 협조

- 부평구 갈등관리에 대한 타 기관 견학 요청에 협조(연간 5~6회)
- 전국 다수의 지자체
- 아시아문화재단, 수도방위사령부, 대통령 경호실 등 기관

- **갈등관리 유공자 표창**

- 목적: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공갈등 및 공동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표창을 통한 지역 내 갈등해결 문화 조성
- 표창 규모: 2개 부문(주민·공직자) 각 1명

수범사례2 주민 주체의 마을갈등조정단·이웃소통방 운영

□ 사업 추진 배경

- 최근 행정의 흐름은 주민 참여·자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내용과 형식을 갖춰 주민과 함께 또는 주민 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추세임
- 전국 최초 갈등조정관제도 도입, 갈등관리힐링센터 개소·조례제정 등을 통해 갈등관리를 위한 행정적·공간적·법적 근거와 역량을 갖추
- 2년에 걸쳐 전문 양성교육을 받고 갈등관리 역량을 갖춘 주민 조정가가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웃 간 갈등에 적절하게 개입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해짐
-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갈등조정단의 설치와 기능을 정의하고 주민조정가가 주체가 되어 주민자율조정외 이웃소통방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 도모

□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갈등조정단 운영

- 운영 목적
 - 이웃 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 및 지원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
- 운영 주체
 - 갈등관련 교육을 전문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50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조정가
- 추진 과정
 - 2019.5. 부평구 마을갈등조정단 발대식
 - 2020.3.9. 부평구 마을갈등조정단 활동근거를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 2020.4.7. 주민조정가 1기 위촉(8명)
 - 2022.6.29. 주민조정가 2기 위촉(18명), 임기 2년
- 기능 및 역할
 - 공공갈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조정 활동
 - 이웃소통방 운영 및 찾아가는 이웃소통방 운영
 - 지역공동체 사업의 갈등예방·관리, 자조모임을 통한 갈등관리 역량 강화

□ 부평구 이웃소통방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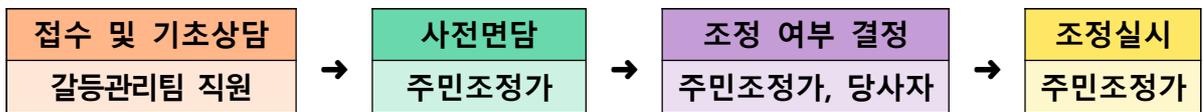
○ 운영 주체

- 마을갈등조정단 소속의 주민조정가가 운영 주체로 지역 생활분쟁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율조정 시행

○ 운영원칙

- 주민 간의 합의조정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의 대화를 통한 해결지원
- 사전면담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후 조정 가능
- 분기별 상담건수에 대한 슈퍼비전 등의 전문가와의 교류·협력

○ 조정절차



○ 조정방법: 주민자율조정

- 이웃 간에 겪고 있는 갈등이나 생활분쟁을 제3의 중립적인 주민조정가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
- 조정 참여, 중단, 합의 여부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지며 어떠한 법적 강제력도 없음
- 조정의 성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 주민 자율조정의 공동체갈등 해결 문화 조성

○ 이웃소통방 운영

(단위: 건)

연도	합계	상담 종결	조정종결
2020년	140	126	14
2021년	183	162	21
2022년	287	260	27
누계	610	548	62

○ 찾아가는 이웃소통방 운영

- 2022년 찾아가는 이웃소통방 운영: 11회
- 2022년 층간소음 예방 교육: 10회

수범사례3 드론을 활용한 공공분야 행정혁신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정사영상 및 3차원 영상 등 정확도 높은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공공분야 행정혁신 도모
- 사업내용
 - 부평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드론 활용 수요조사를 거쳐 업무 추진 목적에 맞는 맞춤형 영상정보 제공
 - 사람이 접근하여 측량하기 어려운 지역과 관내 지형·지물의 변화가 큰 지역들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하여 최신의 공간정보 구축
- 주요활용 분야
 - 지적측량 분야 : 토지현황조사, 확정측량성과검사 등
 - 지적재조사 분야 : 경계조정,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검사, 민원협의 등
 - 기타 행정분야 : 시설물 안전관리, 국·공유지 실태조사, 공원관리 등

□ 추진사항

- 2020. 3. : 인천광역시 자치구 최초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지원’ 추진 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실시
- 2020. 3~12 : 드론 활용 행정업무지원 수요조사 실시에 따른 드론 촬영물 제공(30건, 약 75,480천원 예산 절감 효과)
- 2021. 1. :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실시
- 2021. 1~12 : 드론 활용 행정업무지원 수요조사 실시에 따른 드론 촬영물 제공(40건, 약 85,995천원 예산 절감 효과)
- 2022. 1. :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실시
- 2022. 1~12 : 드론 활용 행정업무지원 수요조사 실시에 따른 드론 촬영물 제공(64건, 약 103,259천원 예산절감 효과)
- 2023. 1. :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실시

□ 사업효과

○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의사결정 지원

-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드론을 통하여 영상 촬영 및 제공함으로써 관련 부서 협업 등 신속한 정책의사결정 지원

○ 공무원 직접 수행으로 예산 절감

- 드론조종 및 데이터 처리 등 전문기술인력 확보로 외부용역 없이 자체 사업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

□ 관련사진(언론보도사항)

수도일보

2021년 2월 1일 월요일 013면 인천

부평구, 드론 활용 스마트행정 추진 확대한다

구산하 전 부서 대상 수요조사 진행... 혁신행정 제공

부평구구획정 차세대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행정을 확대한다.

구는 3월 5일 드론 활용 행정업무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산업의 하나로 공공행위 분야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부평구 도시정보과도 주위에 밀려 구정 전반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헬리콥터형 회전 드론 1대를 구입하고 웨드스튜디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갖춰 드론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2년 연속 공공 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공모에 신청해 전국 4곳 중 1곳으로 선정돼 교육 기원에서 드론 조종교육을 이수한 국가공인 드론조종사 3명 중 2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확보했다.

구는 지난해 인형사 자치구로 는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시 관련 업무뿐 아니라 재래, 공원관리, 건축, 재산관리 등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드론영상 제작 활용하고 데이터처리 후 제공해 최소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상시 신청을 받아 드론 영상 촬영하고 해당 부서에 즉시 제공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태풍 피해를 입은 농경지 촬영 영상을 담당 부서에 제공해 피해면적 확인 및 산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드론 활용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해 드론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정 홍보영상 제작과 도시재생사업 기획회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드론 영상 지원에 보다 빠른 혁신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드론 영상 활용으로 사업별 항공 영상이 별도 구매·제작비용 예산을 줄이는 등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공공의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드론 활용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서울매일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011면 인천

서울매일 무인항공기 운용 예산절감 효과

부평구, 항공영상 직접 촬영 통해 8천6백만 원 절감

관리 및 조성사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적재조사 분야, 국·공유재산 관리, 골포천 도시재생업무 순이었으며 무로 민원 해결이나 정책 결정 지원 및 사업 홍보에도 활용됐다.

구는 지난해 2020년부터 다양한 행정업무와 관련해 드론의 활용성을 광범위하게 판토했다.

그 결과 드론 구입 및 관련 교육을 이수했으며, 현재까지 5명의 자격자를 양성했다.

구는 예산절감 효과 외에도 직접 드론을 운영해 용역계약 절차에 따른 번거로움 없이 즉시 필요한 항공영상을 촬영·제작해 지원하는 등 업무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해 사업부서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취득 및 3D 모델링 등 활용분야를 적극 발굴해 사업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규기자

경기도민일보

2023년 1월 6일 금요일 013면 지역

'드론 활용' 1억300만원 예산 절감

전문 기술인력 확보 외부 용역 없이 사업 추진

부평구, 동영상 15건 등 촬영

인천 부평구가 지난해 드론을 활용한 행정지원을 통해 약 1억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5월 구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 한 해 동안 드론으로 총 64건의 항공영상을 촬영해 행정업무에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2021년 대비 20건, 2020년에 비해 34건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기준 드론의 주요 활용 분야는 공원관리 및 조성사업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 분야(16건), 도시재생(10건), 도시농업(9건), 건축(5건) 순으로 조사됐다.

구는 지난해 2020년부터 드론이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될 것으로 판

단하고 드론 구입과 교육 이수 등 준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총 7명의 드론 조종자를 양성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드론조종 및 데이터처리 등의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해 외부 용역 없이 드론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한 결과 28건의 점사업상과 사진 37건, 동영상 15건 등을 촬영해 약 1억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특정 사업에 항공 영상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 영상을 지원할 수 있어 업무 효율도 높여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해 사업 부서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것"이라며 "항공영상 데이터 취득 및 3차원 모델링 등 행정 업무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사업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규기자

수범사례4

지역사회 거동불편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미(美)드림 봉사단』 운영

□ 추진목적

- 부평구 미용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미(美)드림 봉사단』이 평소 미용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하여 직접 어르신 가정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미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미(美)드림 봉사단 구성
 - 단체명칭: 찾아가는 미(美)드림 봉사단
 - 구성인원: 33명 [(사)대한미용사회 인천부평구지회 소속 회원]
 - 조 편 성: 13개조
- 미(美)드림 봉사단 운영
 - 기 간: 2023. 4. ~ 12.
 - 대 상: 거동 불편 어르신, 장애인
 - 장 소: 거동 불편 어르신 가정, 장애인 복지시설
 - 봉사횟수: 월 1회
 - 봉사일자: 매월 셋째 주 화요일(변동 가능)
 - 봉사내용: 머리 자르기, 머리 다듬기, 눈썹손질 등

□ 추진현황

- 『찾아가는 미(美)드림 봉사단』 발대식 개최
 - 일 시: 2023. 4. 4.(화) 10:30~11:20
 - 장 소: 부평구청 3층 중회의실
 - 참석인원: 구청장, 의장, 경제환경국장, 위생과장 외, 미(美)드림 봉사단 27명
 - 행사내용: 미(美)드림 봉사단 회원소개, 선서문 낭독, 표지판 전수 등
 - 미(美)드림 봉사단 발대식 개최 보도자료 게재: 2023. 4. 6.(목)

- 미(美)드림 봉사단 4월(1회차) 봉사 실시: 2023. 4. 18.(화)
 - 거동 불편 어르신 가정 22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은광원) 1개소(※ 수혜자 22명)
 - 미(美)드림 봉사단 4월 봉사 관련 보도자료 게재: 2023. 4. 19.(수)
 - 미(美)드림 봉사단 봉사 실적 등록·관리 협조 요청: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 기대효과

- 봉사 수혜 대상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 관련사진



『찾아가는 미(美)드림 봉사단』발대식 개최



『찾아가는 미(美)드림 봉사단』 4월 봉사활동

수범사례5 찾아가는 집수선 서비스 「우리동네 맥가이버」

□ 사업개요

- 사업명: 찾아가는 집수선 서비스 「우리동네 맥가이버」
- 사업기간: 2023. 3. ~ 2023. 12.
(월, 화, 목, 금, 토요일 09:00~18:00 운영)
- 사업대상: 부평구 관내 전역
 - 일반가정(홀몸노인, 장애인, 여성 등 가구)
 - 어린이집, 경로당 등
 - ※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는 제외
- 사업내용: 마을주택관리소 공구를 활용한 소규모 간단 집수선 방문 서비스
 - 등기구, 수전, 방문 손잡이 및 방충망 교체 등 간단한 집수선
- 배치인력: 맥가이버 3명
 - 현장배치: 관내 마을주택관리소 중 맑은내마을(마장로459번길 19, 청천1동)
 - 2인 1조 방문 활동
- 이용방법: 전화접수(예약) 후 현장 방문 실시

□ 추진현황

- 2023. 3. : 마을주택관리소(우리동네 맥가이버 사업 포함) 운영 추진 계획 수립
- 2023. 3. : 우리동네 맥가이버 사업 시행

□ 추진실적

월별	소계	간단 집수선 항목				
		등기구	수전	방문 손잡이	방충망	기타 설비 (보일러 등)
2023. 3.	12	6	2	2	-	2

□ 기대효과

- 경력직 신중년을 활용하여 소규모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 생활 불편 해소 및 주거의 질 향상

□ 관련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등기구 작업 전</p> 	<p style="text-align: center;">등기구 작업 후</p> 
<p style="text-align: center;">문고리 작업 전</p> 	<p style="text-align: center;">문고리 작업 후</p> 
<p style="text-align: center;">수전 작업 전</p> 	<p style="text-align: center;">수전 작업 후</p> 
<p style="text-align: center;">보일러 작업 전</p> 	<p style="text-align: center;">보일러 작업 후</p> 

수범사례6

2020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 사업개요

- 사업명: 부흥 생태놀이터 조성
- 위치: 부평구 부평동 178(부흥어린이공원)
- 면적: 3,756㎡(어린이놀이터: 625㎡)
- 사업비: 1,000백만원(구비100%)
- 사업기간: 2018. 3. ~ 2019. 8.
- 사업내용: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산책로 조성 등
- 선정권자: 행정안전부 장관

□ 추진현황

- '18. 3.: 부흥 생태놀이터 추진계획 수립
- '18. 3. :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8. 4. 27.: 제1회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및 Play Group 구성
- '18. 6. ~ 7. : 어린이 의견수렴 프로그램 운영(부흥초등학교 24명, 6회)
- '18. 7. 25. ~ 9월 7일 : 제2회·3회 민간자문위원회 개최
- '18. 11. 13. : 도시공원위원회 조성계획 변경(안) 심의(조건부가결)
- '18. 12. 4. : 제4회 민간자문위원회 개최
- '19. 3. 19. ~ 8. 30. : 부흥공원 생태놀이터 착공 및 준공

□ 관련사진



인천 부흥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7곳 우수 놀이시설 선정

A-이영주 기자 · ① 입력 2020.11.18 14:37 · ② 수정 2020.11.18 17:45 · ③ 댓글 0

가 가



행안부, 7만6000여개 어린이 놀이시설 중 안전관리 등 고려



부흥어린이공원 놀이터 / 사진·이영주 기자

많이 본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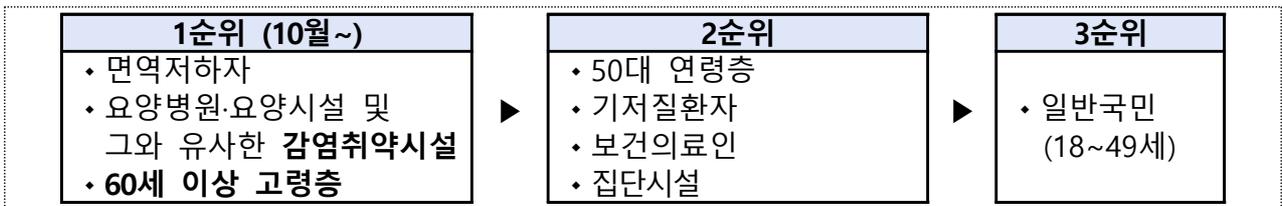
- 1 대전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 ..
- 2 택배노조 "택배노동자 국회 진출... 노동...
- 3 강릉 초대형 산불 발생... 전국 16개시도 ...
- 4 제주 공사현장 50대 추락 사망
- 5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용...
- 6 서울지하철 '발빠짐 사고' 자동안전발판으...
- 7 직업건강협회 '소규모 사업장 건강지킴이 ...
- 8 한덕수 국무총리, 강릉 산불 진화 종결 긴...
- 9 국토부 '정차교 보행로 안전점검 규정 있다'
- 10 '고소작업대' 사고로 15개월간 38명 사망.....
- 11 도로교통공단, 교통조사관 대상 자율주행...
- 12 권익위, 서울교통공사 임용 관련 '복정민 ...
- 13 전북도, 올 들어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
- 14 교통안전공단-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 15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시설물 점검과 구조...

수범사례7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필요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며, 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터운 보호를 지속하고, 2가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를 활용하여 유행억제를 통한 중증·사망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우선순위에 따라 건강 취약 계층부터 단계적 확대



- (접종백신) 초기유행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모두 대응 2가 백신
- (접종방법) 보건소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 추진현황 : 60대이상 및 감염취약계층 접종 중심

- 보건소 방문 접종팀 구성 (2개조) 의사 2인 / 간호사 2명 / 행정인력 2인
 - 경로당·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방문접종, 주야간 보호센터 : 18개소 443명
 - 감염취약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 45개소 1,250명
-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제고를 위한 부서별 전담 공무원제 실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 요양병원 7개소 • 인력 : 6명	• 요양시설 62개소 • 장애인시설 32개소 • 인력 : 34명	• 정신병원 3개소 • 인력 : 2명

- 전담기관 독려전화 (1회이상 /1일), 접종률 저조시 보건소장·부서장 방문
- 2가 백신 안전성 전달 및 동절기 추가접종 필요성 설명
- 접종 독려 이후 소수 인원이라도 방문접종팀 연계·접종

- 60대 이상 접종률 제고를 위한 문자 홍보 및 원스톱 예약 서비스 제공

접종 안내 및 독려 문자전송 • 60대 이상 2차 접종자 • 대상자 : 117,201명 • 인력 : 12명 (모자보건팀)	⇒	전화 안내/ 예약 • 회신 문의 전화 안내 • 접종 설명 및 예약 진행 • 인력 : 8명 (예방접종실)	발송 실적 총 7회 593,141건
---	---	---	----------------------------------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 부평사람들, 반상회보, SNS,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통장회의 홍보등

□ 추진실적

○ 접종률 제고 및 구민 건강 증대

- 코로나 동절기 추가접종 62,127건(12.8%, 인천4위)로 인천시 11.6% 보다 상회
- (취약계층) 전담공무원제 시행 후 40.9%(인천9위)에서, 62.5%(인천4위)로 향상
- (60대이상) 개별문자 관리 전 27.4%(인천7위)에서, 34.7%(인천3위)로 접종률 향상

□ 관련사진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2가백신) 안내

동절기 추가접종에 활용되는 오미크론주 기반 2가백신은 기존접종(1,2차)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인 1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몇 차례까지 완료하셨습니다?

4차접종 완료	3차접종 완료	2차접종 완료	1차접종 완료	미접종
---------	---------	---------	---------	-----

동절기 접종(2가백신)

- 접종대상: 취약계층(중요인력 120만 명) 및 고령·장애통계 100만 명
- 접종대상: 오미크론 변이주 기반 mRNA 2가백신
- 접종대상: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다문화가정, 다문화·다문화가정, 다문화·다문화가정
- 접종대상: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다문화가정, 다문화·다문화가정, 다문화·다문화가정

접종예약 및 일정

사관대상	2가백신(1차)	예약일	접종일
사관대상: 10만 27만여명	2022.11.15	11.17(토)	11.22(목)
사관대상: 10만 27만여명	2022.11.15	11.17(토)	11.22(목)
사관대상: 10만 27만여명	2022.11.15	11.17(토)	11.22(목)

【별수용보】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2가백신) 안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2가백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 및 중증 예방효과를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 대상: 만 18세 이상 중 고위험(2차)접종완료자, 미접종(3차) 3개월(90일) 경과자

○ 백신종류: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 3종
BA.1 오미크론 / BA.1 2가백신 / BA.4/5 2가백신

BA.1 2가백신은 기존백신 대비 BA.1에 1.75배, BA.4/5에 1.68배 높은 중화능이 확인

오미크론 2가백신(BA.1 및 mRNA) 임상시험 결과, 2가백신(BA.1 2가백신)을 접종한 BA.1과 BA.4/5에 대한 면역 반응은 우수함

○ 접종기관: 부평구보건소 및 관내 129개소 의료기관
※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선 문의 및 보건소 홈페이지 알바디를 참조

○ 준비물: 신분증

○ 접종 방법 ①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kdca.go.kr>) (내리배달 가능) 전화예약(1339, 032-459-4420)
②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버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연락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증진과 ☎ 032-509-8252】

부평구 보건소

수신 내부공지 (공유)

계속 코로나 19 동절기 추가 접종 홍보 계획

거동중 코로나 19 재유행 위험에 따라 감염예방 및 중증화 회피를 위해, 아외의 같이 홍보를 진행하여 코로나 19 감염률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대 시키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18세 이상 관내 주민
나. 기 간 : 2022. 11. ~
다. 홍보방법 : 동행정착지 선택, 위탁의료기관 유인물 및 홍보물 배부
라. 내 용
- 백신 소개 (오미크론 변이주 2가 백신 3종 - 오미크론 2가 BA.1, 2가 BA.4/5)
-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접종 홍보
- 안내 유인물 - 동절기 추가 접종 및 중증 회피 안내 (장면포장)
- 홍보물 - 장바구니, KF94 마스크, CI 워싱 3종 세트

장바구니	KF 94 마스크	CI 워싱 3종 세트
------	-----------	-------------

마. 소요예산 : 14,322,000 원(내 (통계세, 시비 100%)

내역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홍보 유인물	20,000 장	75 원	1,500,000 원	부가세포함
장바구니	2,400 개	2,010 원	4,826,400 원	부가세포함
KF 94 마스크	13,000 장	390 원	5,097,000 원	부가세포함
CI 워싱 3종 세트	1,300 세트	1,890 원	2,457,000 원	부가세 포함 순이익 50% 포함 / 17,000 원
합계			14,277,000 원	회계비율 포함 14,322,000 원

붙임 : 홍보유인물 내용 및 홍보물 부착 스티커 시안. 문.

동절기 접종 홍보지

반사회보 홍보

접종 홍보 계획



경로당 방문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



문화센터 방문접종



요양병원 접종 제고 요청 방문

수범사례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규모미만* 노유자 이용시설
 - * 규모미만 기준 : 어린이집 430㎡미만, 노인복지시설 : 1,000㎡미만
- 내 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규모미만 노유자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 추진현황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작성 : 1월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실시 안내문 발송 : 연 4회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교육 이수 안내 : 연 4회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다중이용시설 특별 점검 : 1월 ~ 3월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 확인 : 수시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 연 1회
- 규모미만 노유자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 규모미만 노유자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신청 안내 : 3월
 - 측정대상 : 규모미만 노유자 이용시설 10개소 내외(4월 ~ 5월)

□ 수범사항

- 대면 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실내공기질 관리자가 시설을 관리하며 생기는 애로사항 청취 가능
- 영유아나 노인과 같이 면역력이 약하고 실내 활동이 많은 민감계층의 건강보호에 기여

□ 관련사진

○ 규모미만 노유자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사진

